

발 간 등 록 번 호

32-9740029-000587-01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원행정처

재판사무시스템의 「장애인 사법지원」 메뉴에서 가이드라인의 본문 내용을 볼 수 있고, 각종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 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역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사법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비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고, 우선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의 단계별 지원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 책자에 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 행정소송 및 회생·파산 절차뿐 아니라 일반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법부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은 단순한 이해와 배려를 넘어 소수자 권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제도화되어 누구든 어려움 없이 제공할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작업이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가이드라인이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의 장애인 지원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그 내용을 충실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사법절차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을 구체화·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013. 7.

법원행정처장 차 한 성

장애이사법지원연구반

반장	유승룡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반원	임선지	서울고등법원 판사
반원	도영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반원	류영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반원	박성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반원	심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반원	안승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반원	윤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반원	장정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반원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반원	최우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반원	김미경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차례

I. 총설

1. 서론	13
2.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15
가. 헌법	15
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16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7
1) 개요	
2)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3) 정보접근,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차별금지 등	
라. 기타 법령	19
3. 장애의 개념 및 유형	20
가. 장애의 일반적 개념 및 유형	20
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21
4.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	22
가.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의 필요성	22
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23
1)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3) 편의시설 등	
4) 적절한 휴식시간, 휴게공간 제공	
다. 시각장애	25
1) 시각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이동·활동의 보조	
3) 문자 등 시각적 정보에 대한 접근	
4) 점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낭독프로그램, 음성자료 등	
5) 저시력 시각장애인	
6) 전자파일 확보의 중요성	
라. 청각장애, 언어장애	30
1) 청각장애, 언어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성	
3) 수화	

4) 구화	
5) 문자통역 등	
마. 지적장애,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	35
1) 정신적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바. 내부기관장애	37
사. 중복장애	37
5. 장애인 사법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절차	38

II.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접수, 소장심사 및 송달	43
가. 접수단계	43
1) 장애 유무의 확인 및 장애인 사법지원 절차 안내	
2) 장애가 확인된 경우의 조치	
나. 소장 심사 단계	45
1) 법원사무관등의 소장 심사	
2)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및 이에 대한 조치 등의 절차	
3) 정신적 장애인의 소송능력	
다. 소장부분 등 각종 서류의 송달	53
2. 제1회 기일 전	55
가. 소송구조제도의 활용	55
나. 기일 지정	56
3. 재판기일의 운영	57
가. 당사자 본인 등에 관한 확인	57
나. 장애인관련자 등	58
1) 장애인관련자 및 보조인력	
2) 보조견 및 보조기구	
다.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지원	59
1) 통역의 필요성	
2)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역	
라. 변론기일 진행	70
1) 당사자의 불출석	
2) 장애인을 위한 신체적·심리적 고려사항	
3) 조서의 작성	
4) 변론의 속기와 녹음	
5) 소송대리인이나 방청객이 장애인인 경우	

마. 증거조사절차	80
1) 증거신청	
2) 증인신문	
3) 음성·영상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4. 판결의 선고	86
5. 화해·조정 절차	86

III.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장애인과 형사소송	91
가. 장애인의 형사소송능력	91
1)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2)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 장애인의 소송관계인	94
1)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2)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3) 그 밖의 관계인	
2. 공소제기 전	101
가. 영장실질심사	101
1) 피의자심문기일 진행 전	
2) 피의자심문기일의 진행	
나. 체포·구속적부심, 보석허가결정을 위한 심리	106
3.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107
가. 공소장부분 등의 송달	107
나. 제1회 공판기일의 준비	108
1) 국선변호인	
2) 편의제공 준비	
3)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전 유의할 사항	
다. 증거제출 전 수사 서류의 열람·등사	112
1) 피고인이 직접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2) 변호인이 등사를 신청한 경우	
라. 공판준비기일의 활용	114
마.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114
4. 공판기일의 심리	115
가. 장애 유형별 유의사항	115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 언어장애	
3) 정신적 장애	
나. 공판기일의 심리	118
1)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인정신문	
2)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3) 통역	
4) 공판조서의 낭독	
다. 증거보전절차	123
라. 증거조사절차	124
1)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2)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	
3)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	
마. 피고인신문	127
바. 장애인에 대한 증인신문	127
1) 증인지원관	
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3) 증인 선서 및 서명 · 날인	
4)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5) 장애 유형별 유의사항	
사.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 등사	134
5. 국민참여재판	135
가.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135
나. 배심원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	136
1)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 단계	
2) 배심원 선정기일	
3) 공판기일	
6. 판결의 선고	139
안내문 및 신청서	141
1.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	
2.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3.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4. 통역인 안내문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안내문	
6.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7. 통역이 필요한 사건의 변호에 관한 안내문	

I

총설

1. 서론
2.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3. 장애의 개념 및 유형
4.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
5. 장애인 사법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절차



I. 총설



1. 서론

종래 장애가 있는 사람은 편의시설의 부족, 사회적 편견,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원 조치의 미비 등으로 가정이나 특수학교·시설 혹은 장애인 공동체 등에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분리되어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사례 또한 드문 편이었다. 그러나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권에 관한 관심의 고조, 통합교육과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의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이 법원의 재판절차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이익을 입기 쉬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사법절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신체적 장애 때문에 법원 등의 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로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법 앞의 평등(헌법 제11조)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

국제연합(UN)이 2006. 12. 13. 제61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제정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¹⁾는 장애인의 사법접근에 관하여, 국가는 모든 법적 절차

1)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정절차에서 장애인의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

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2008. 12. 11. 비준되어 2009. 1. 10.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2007. 4. 10. 제정되어 2008. 4. 11.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법지원²⁾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협약이나 법률은 포괄적인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양한 종류의 재판절차 및 그 개별적 단계에서 장애의 유형·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사법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양한 소송 유형 및 각 절차의 개별적 단계에서 장애의 유형·정도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사법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법원의 장애인 관련 재판에서 실무례가 쌓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장애인의 재판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먼저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사법지원의 내용,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각 절차 단계별 사법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가사소송, 행정소송,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기타 비송사건 등에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사법지원 내용을 준용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나이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효과적인 사법접근권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한 사법행정예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조치에 관하여 ‘편의’ 내지 ‘편의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법원이 장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지원 의무의 많은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밖에도 헌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법원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지원 조치에 관하여 이러한 근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법부의 지원’, 즉 ‘장애인 사법지원(司法支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많을 것이고,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주로 민사소송에서와 다른 사법지원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가. 헌법

장애인이 재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지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의 보장에 해당한다. 특히 형사소송절차에서 장애인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는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에 해당한다.

장애인이 민사소송의 당사자 또는 형사소송의 피고인 등의 지위가 아니라,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 법원 직원과 같이 국가기관의 구성원 지위에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의 공직 수행을 위한 각종 조치 및 지원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이 그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장애인 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증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은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에 있어 거의 모든 국면에서 중요한 준거 규범으로 작용한다. 헌법상 평등권은 서로 같은 것에 대한 다른 취급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것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것 또한 금지하므로,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더욱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헌법이 그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개별 법

령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재판절차를 마련하며, 나아가 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거 규범이 될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우선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본문과 형사소송법 제181조는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에게 수화통역³⁾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수화가 아닌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문자를 통한 질문·진술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규칙 제73조의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있다. 위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단서는 속기사 등을 통한 문자통역의 근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4호, 제5호). 또한, 형사소송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제163조의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을 받는 피의자(제244조의5), 공판에서 신문을 받는 피고인(제276조의2) 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거나(피해자의 경우)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55조 제2항의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문맹인 외에도 시각장애나 난독증이 있는 장애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단서의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말을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과 지체장애·뇌병변장애 등으로 글씨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3)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제6조는 각급 법원으로 하여금 매년 1월 말까지 농아자의 수화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번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는 ‘통역예규’라고 한다.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 개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에서 제1절 고용, 제2절 교육,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5절 모·부성권, 성(性) 등,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지하는 ‘차별’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제4조 제1항).

2)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제1항) 외에,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제4항),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각종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제5항) 및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표현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사법기관의 의무(제6항) 등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로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이므로 장애 유형·정도 및 구체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더욱 다양한 내용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3) 정보 접근,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차별금지 등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0조 제1항), 장애인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⁴⁾,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수단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4) 말이나 글자를 점자로 고침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 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라고 정하고 있다.

라. 기타 법령

앞에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이외에도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법원이 재판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 등을 구축·관리하는 경우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3조, 제4조, 제7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법원 청사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앞에서 살펴본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18조 제3항에서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에게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이용, 비상시 대피와 관련하여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때 상당한 편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는 대상 시설이나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 청사나 법정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청사 내 법정의 위치 또

는 법정외 좌석 배치 등으로 인하여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이 법정외 방청석, 당사자석, 증인석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정에서 기일을 진행하거나 법정외 좌석 배치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장애의 개념 및 유형

가. 장애의 일반적 개념 및 유형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사법지원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기본 전제로서 검토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 장애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사법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의 개념은 개별 규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의 개념을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개념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그 중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또는 내부기관의 장애를,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하여 다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등급을 나누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잔존 시력과 시야의 각도 등에 따라서 제1급에서 제6급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는 장애인 등록제도를 통한 장애수당, 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일 뿐이므로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를 입게 된 원인은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즉 선천적·후천적 장애를 불문하고, 그 장애로 인하여 필

요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원래 장애인 아닌 사람이 노령,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청력, 시력 또는 운동능력 감소 등의 제약이 있게 된 때에는 단순히 노인이나 환자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을 전제로 하여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념과 사법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 모두 사법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사법접근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장애인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안면기형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라는 하나 안면기형 때문에 언어장애 등 다른 장애가 수반되지 않는 한 별도의 사법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질병, 상해 등으로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경우 ‘오랫동안’ 제약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는 지속성 요건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더라도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 접근하기 위한 사법지원은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

가.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의 필요성

흔히 장애인과 관련하여 떠올리는 이미지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으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수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 그에 따라 도로의 턱 제거, 경사로 설치, 엘리베이터 등의 물리적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함은 물

론이지만, 다양한 유형과 정도의 장애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편의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장애 유형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을 살펴본다.

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1)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지체장애는 인체의 골격, 근육, 신경 등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입어 운동장애(또는 감각장애)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뇌병변장애는 뇌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신체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뇌성마비, 뇌졸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 손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뇌성마비는 임신, 출산, 영유아기 등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와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마비가 더는 진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뇌졸중은 뇌에 이르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짐으로써(뇌출혈) 뇌조직에 손상을 입어 반신불수,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은 외상에 기한 것으로서 그 증상은 뇌졸중 등과 유사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적능력의 제약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신체활동, 발성능력 등의 제한 때문에 지적장애인으로 단정하기 쉬운데, 뇌성마비장애인의 지적능력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뇌성마비장애와 지적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한다. 뇌졸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 손상이 원인이 된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의 운동능력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뇌 손상으로 사고기능, 논리적 추론능력 등 지적능력의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제한되는 것이 신체능력에 한정되는지, 지능이나 사고능력까지 제한되는 것인지를 법원이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지체장애인이거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것은 이동능력 또는 이동수단이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은 지정된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 청사 또는 법정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이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하는지,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지, 경사로나 계단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동·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나아가 중증의 지체장애인이거나 뇌병변장애인은 이동,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하여 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장애인이 개인적인 보조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활동보조인을 대동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임시로 보조인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증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뇌 손상이나 조음, 발음기관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언어기능에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로서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내용은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에 한하지 않고,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에서부터 조음 장치,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기타 입력장치의 제공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이나 보조기구 등은 장애인의 연장된 수족과 같이 생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및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5호, 제6호).

3) 편의시설 등

경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혼자 보행할 수 있으나 계단 등을 이용할 때 잡고 이

동할 수 있는 난간이나 넓은 폭의 계단이 필요하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건물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계단으로만 접근하도록 해서는 곤란하고, 경사로를 통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회전문은 중증 지체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에 설치된 자동식 회전문이 아닌 한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회전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휠체어에 탑승한 채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회전문이 아닌 별도의 출입구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법정의 당사자석, 증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석 등의 공간 역시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탁자 역시 휠체어 높이를 고려하여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적절한 휴식시간, 휴게공간 제공

중증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또는 법정 내 좌석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신체적인 무리가 될 수 있고,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빈번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장애인에게 물어보거나 그 상태를 살펴 필요한 경우 일정 간격으로 휴정하는 등 적절한 휴식시간 및 휴게공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시각장애

1) 시각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시각장애는 물체를 식별하는 눈의 기능상 결함 등으로 시각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데, 시력과 시야의 각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시각장애 제3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절차와 관련한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시각장애 등급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이동이나 정보 접근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대안적 정보 접근방식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 그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잔존시력의 정도에 따라 문자형태의 정보를 점자, 화면낭독프로그램, 음성녹음자료 등에 의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전맹 또는 그에 가까운 시각장애인과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나 확대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각각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시각장애인은 대부분 소리로 상황을 파악하게 되므로, 함께 대화를 하거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특히 여러 사람이 대화나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힌 다음 내용을 말하도록 한다. 그리고, 재판장이나 대화의 상대방은 소리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때에는 말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소송절차 진행 중 어떠한 소송상의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그 허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이크를 끈 채 합의를 하게 되는 때에는 재판장이 합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재판부에서 합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

2) 이동 · 활동의 보조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에는 점자 블록, 점자 안내판, 전자음성 안내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흰색 지팡이를 이용하여 혼자서 보행할 수 있거나, 활동보조인 또는 장애인 보조견(맹인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구인 흰색 지팡이나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이나 동반을 방해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흰색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독립적 이동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보조기구이고, 매년 10월 15일은 흰 지팡이(white cane)의 날로 정하여져 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

2항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그 보호자로 하여금 흰색 지팡이 또는 맹인 안내견을 동반하도록 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모든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문자 등 시각적 정보에 대한 접근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동이나 활동 보조의 문제와 함께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문자 형태의 시각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의 정도나 그 장애인이 사용하는 정보 접근 방법에 따라 사법지원 역시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해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5.2%, 점자해독을 배우는 중인 사람이 0.9%로서, 2005년 점자해독 가능 비율(2.4%)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아직 점자 문맹률이 93.9%에 달하는 사실⁵⁾을 고려하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가 처음 나타난 시기가 늦을수록 점자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음성변환 등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전자파일로 된 자료를 점자 단말기나 화면낭독프로그램⁶⁾이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오히려 점자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결국, 전맹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어떤 정보 접근 방식을 이용하

5) 김성희 외 10인,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44쪽

6)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되는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

는지를 살펴 그에 맞추어 시각적 정보를 점자, 화면낭독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 전자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사용을 위한 바코드 인쇄, 음성자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점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낭독프로그램, 음성자료 등

점자는 수동으로 찍어내기도 하나 현재는 전자파일과 점자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반 문서파일을 바로 점자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을 점역에 맞게 수정하고, 점자로 출력된 결과물을 점검하여 오타, 맞춤법 등을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수학, 과학, 중국어나 불어 등 제2외국어, 악보, 그림 등 특수 점역의 경우에는 점역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작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으로 점역사가 있다. 점역한 문서는 일반 인쇄물보다 3~4배 이상 분량이 늘어나고, 점역 인쇄물 한 장의 두께도 일반 인쇄물 한 장보다 훨씬 두껍다. 점자 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이 문서 파일을 입력하면 점자나 소리로 출력해 주는 정보통신장치를 말한다.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는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인 등을 위하여 인쇄물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전달해 주는 장치이다. 문서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음성변환출력기에 가져다 대면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준다. 작은 바코드 이미지에 A4 용지 한 장 분량에 해당하는 인쇄물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점자보다 분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러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낭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찾아 듣거나 반복하여 듣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화면낭독프로그램은 각종 문서파일(파일 확장자가 txt, hwp, doc 등으로 된 파일)을 소리로 읽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재생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원하는 부분을 찾아 바로 접근하거나 반복하여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텍스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파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이미지 파일 등은 아직 사용할 수 없으며, PDF 파일은 텍스트와 문서구조가 담긴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화면낭독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성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은 그 매체에 따라 CD롬, 자기테이프, 전자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위한 2차원 바코드 인쇄 등을 들 수 있다.

5) 저시력 시각장애인

잔존 시력이 남아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큰 활자로 확대된 인쇄물이나 화면확대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확대경, 확대독서기 등을 통해 시각적인 인쇄물을 볼 수 있다. 그 중 확대독서기는 고성능 카메라가 달린 확대장치를 신문, 책 등에 올려놓으면 확대된 글자가 모니터, TV 화면 등에 나타나게 하는 기기로서 탁상용뿐 아니라 휴대용도 개발되어 있다.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글자색이나 배경색을 적절히 조절할 수도 있다. 법정에 비치된 실물화상기 역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서류나 증거물을 확대하여 법정 스크린이나 모니터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도 전맹인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전자파일을 음성으로 낭독해 주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자료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때도 있다.

6) 전자파일 확보의 중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점자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고 점자를 수동으로 찍어 제공하거나 인쇄물을 광학적 방법으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의 몇 가지 방법을 제외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방법은 모두 시각적 인쇄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송서류 등을 전자파일로 확보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의 시각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로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14조 제2항 제2호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와 함께 ‘표준텍스트파일’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절차 등에서 제출된 문서가 컴퓨터로 작성되어 전자파일이 존재하고 법원이 그 전자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인식·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프린터 출력물,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 문서, 화면낭독프로그램을 통한 재생이 가능한 파일 등의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이 작성한 공문서는 물론이고, 경찰,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이 작성한 문서나 상대방 당사자·대리인 등이 작성한 문서도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그 전자파일을 확보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재판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 당사자 등이 전자파일의 조작·변개가능성 내지 무분별한 유포가능성을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종이 출력물 형태로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은 존재하고 나아가 전자파일의 조작·변개나 유포가 일정한 민·형사 책임을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추상적인 위험을 이유로 들어 시각장애인이 재판 관련 문서에 접근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각장애, 언어장애

1) 청각장애, 언어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청각장애란 청력 손실 또는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언어장애

란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청각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청력을 잃은 사람’과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재판절차와 관련한 사법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람은 청력을 잃은 사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중 독립적인 이동 등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청력의 상실 정도를 인식 가능한 소리의 데시벨(dB)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청각장애 등급을 제2급부터 제6급까지로 나누고 있고,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의 잔존 정도에 따라 언어장애 등급을 제3급과 제4급으로 나누고 있다. 재판절차 등에서 필요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와 같은 장애 등급이 참고할 만한 기준은 될지언정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성

청각장애인이거나 언어장애인의 경우에는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 배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청각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흔히 수화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청각장애인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쓴다.

2011년 조사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말(86.8%)이었고, 다음으로 수화(4.6%), 구화(3.8%), 몸짓(2.8%), 필담(글로 쓰기)(1.9%)의 순이었다⁷⁾.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지원함에 있어서 청각장애인 중 수화, 구화 등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은 점과 수화, 구화 외에도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위 김성희 외 10인, 151쪽

3) 수화

수화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의사소통 지원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청각장애인의 수화 구사 정도나 수화통역인의 통역 숙련도에 따라 통역의 정확도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수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하여 복잡한 범죄사실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진술 내용이 바로 수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수화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문법식 수화는 어순, 조사, 용언활용, 시제 등이 국어식 어법에 맞게 체계화된 수화이고, 농식 수화는 청각장애인들 사이에서 통상 사용되는 수화로서 어순, 관용적 표현 등 표현방식이 문법식 수화와 큰 차이를 보인다. 수화통역사 시험은 문법식 수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수화통역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농식 수화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들 가운데에는 농식 수화 외에 문법식 수화도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수화통역인을 지정할 때에는 수화통역사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청각장애인들과의 교류나 수화통역 경험 등을 통하여 농식 수화에도 능숙한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수화통역인이 농식 수화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고, 동시에 청각장애인도 문법식 수화를 익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수화통역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농통역사’라고 하는데, 문법식 수화를 구사하는 통상의 수화통역사와 농통역사를 함께 활용할 경우 농식 수화를 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수화통역사의 통역의 정확성에 의심이 들거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 농통역사의 추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의 문장 이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문자통역을 병행하는 것도 통역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농학교 등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외부와의 교류 없이 주로

가정에 격리되어 성장한 청각장애인은 농식 수화마저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청각장애인이 문장 이해 능력도 충분하지 못하다면 손짓, 몸짓, 표정 등 기초적 의사소통 수단을 써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등 가까운 사람만이 그 청각장애인이 구사하는 수화나 몸짓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화통역사 외에 가족, 친지 등도 추가 통역인으로 지정하거나 의사소통을 보조하게 할 필요가 있다⁸⁾.

4) 구화

청각장애인 중에는 특수한 교육을 통하여 입 모양을 읽는 방식(독화(讀話), lip reading)으로 상대방의 말을 인식하고, 발화법을 익혀 음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 방식을 수화와 구별하여 ‘구화’라고 한다.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경우 발음을 분명히 하고 입 모양을 정확히 하며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서 대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통역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화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이나 대화를 전부 구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수화가 아닌 구화를 구사하는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잘 알아들을 것이라고 선불리 생각하기 쉬우나, 입술을 읽어 상대방의 말을 인식하는 독화는 대화 속도, 상대방과의 거리, 주변 소음(독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잔존 청력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대화의 주제(일상적 대화인지, 전문적 내용인지) 등 상황에 따라 그 이해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재판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독화를 통하여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화는 1대 1의 안정된 대화 공간에서, 양 당사자가 잘 아는 주제에 관하여 이루어지

8) 손말이음센터에서는 인터넷(www.relaycall.or.kr)이나 휴대전화(국번없이 107)를 통한 원격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정 이외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는 이상적 환경이 아닌 이상 전체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 중에는 알아들은 척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므로, 독화나 구화를 구사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그 이해나 구사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수화 또는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재판부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5) 문자통역 등

수화통역으로 법률용어 및 복잡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기가 어렵거나 청각장애인의 수화·구화 등의 구사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속기를 이용한 문자통역이 유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73조는 문자나 서면을 이용한 질문 및 진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는 속기능력을 갖춘 속기사가 다수 채용되어 있고 법정 스크린을 통하여 속기 화면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는 속기 방법을 활용한 문자통역으로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송절차 등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수화나 구화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자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키보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장검증과 같이 컴퓨터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거나 키보드 조작에 능숙하지 못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접 종이에 글을 써서 대화하는 필담(筆談)이나 휴대 전화 또는 노트북 등을 이용한 문자입력을 통한 의사소통도 유용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문자통역은 충분한 문장 이해 능력을 전제로 하는데, 청각장애인 중에는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맹이거나 문장 이해 능력이 극히 낮은 경우도 있으므로, 문자통역을 의사소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전에 해당 청각장애인 등의 문장 이해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은 그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삼아, 해당

청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둘 중 어느 하나를 적절히 선택하거나 양자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지적장애,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

1) 정신적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지적장애는 일반적으로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은 것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인지기능, 언어능력, 운동기능, 사회적 발달 등을 종합하여 표준화한 지능검사, 사회성숙성검사를 하여 그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사람을 지적장애인이라고 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도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를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발달장애(자폐성장애)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명확한 정의가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행동유형을 보이며,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자폐증, 과잉행동, 공격성 등이 대표적인 특성이다. 발달장애의 경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과거에는 단순히 이를 지적장애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지능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점차 이를 발달장애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역시 1999. 12. 31. 개정부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별개로 분류하고 있다.

정신장애는 정신분열증, 양극성정동장애, 분열형정동장애 및 반복성우울장애 등⁹⁾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9) 위 김성희 외 10인, 2013년 장애인실태조사(100쪽)에 따르면,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신분열증: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이 무뎠지는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장애 등이 나타남
- 양극성정동장애: 기분 및 감정의 변동이 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고비약, 수면장애(잠을 거의 자지 않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조증 상태와 기분이 비정상

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지적장애인이 참여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는 1) 지적장애인의 재판절차 자체 및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진술에 대한 이해 정도, 2)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3)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된다. 지적장애인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재판부는 가능한 쉬운 용어로 해당 재판절차를 설명·진행하고,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그의 진정한 의사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피고인이나 증인 등으로 지적장애인을 신문할 때에는 신문에 앞서 신뢰관계를 충분히 형성하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며 초점 질문이나 암시형 질문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그림 또는 해부학적 인형 등 적절한 보조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장애인의 진술과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자폐성, 과잉행동, 공격성에 대하여 재판부가 충분한 사전 이해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이동, 접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증상에 대한 특성 즉 ‘발작,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현저한 성격변화, 조울증 때문에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가 급변하는 것,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 등에 대하여 재판부가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여 재판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장

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 상태가 반복됨.

- 분열형정동장애: 정신분열증의 증상과 정동장애(조증 또는 우울증)의 증상이 같은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임
- 반복성우울장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 상태가 반복됨.

애가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용한 경우도 있다.

바. 내부기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내부기관장애는 해당 내부기관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때문에 지속적인 혈액투석의 필요성, 일정 강도 이상의 신체적 운동 곤란, 만성적 기침이나 객혈, 호흡곤란 등의 증상,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잦은 휴식이나 개호가 요구되는 등의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내부기관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재판기일을 지정할 때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고, 재판 진행 중간에 충분한 휴식 시간·휴게 공간을 제공하며,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의 개호·보호를 보장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임시로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특히 내부기관장애의 유형 및 정도가 다양하여 그에 따라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지원 형태도 다를 것이므로 사전에 이를 잘 조사하여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중복장애

앞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장애가 복합하여 중복장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조치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장애 유형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방법의 단순 결합 형태에서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각과 청각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화면낭독프로그램, 수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은 무의미하고, 촉각을 이용하는 점자, 점자 단말기나 손가락 대화(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대화하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청각 중복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방식과 능력은 그 장애인의 의사소통 훈련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여 사법지원이 필요한 특정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장애인 사법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절차

앞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장애인 사법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원이 제공할 수도 있고, 장애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제공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사법지원을 법원에 신청하고, 그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지원의 필요성·내용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제공하는 후자에 의한 절차가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및 제공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민사소송법에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는 경우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143조 제2항) 수화통역인 등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에는 감정인 기피신청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 통역인에 대한 기피에 관한 준용 규정(형사소송법 제25조)을 두고 기피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신청할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5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서 법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원에 대하여 장애 여부에 관한 확인 및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안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청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제38조), 시정명령 신청권(제43조 제1항), 법원에 적절한 임시조치를 신청할 권리(제48조 제1항),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청구할 권리(제48조 제2항) 등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이 법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상 인정되는 신청권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법원의 직권발동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다. 법원은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기록에 편철하거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 등 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고, 그 제공 여부 및 제공된 구체적 사법지원 내용에 관하여서도 신청서의 여백이나 조서에 이를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I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접수, 소장심사 및 송달
2. 제1회 기일 전
3. 재판기일의 운영
4. 판결의 선고
5. 화해·조정 절차



II.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접수, 소장심사 및 송달

가. 접수단계

민사재판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사법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의 장애 유무 및 그 정도를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이 담당재판부에 신속·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1) 장애 유무의 확인 및 장애인 사법지원 절차 안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기관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관계인에게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사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사법지원의 내용 및 그 사법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등을 소개하는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별지 1 참조) 및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별지 2 참조),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별지 3 참조), 소송구조안내문 등을 종합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양식에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해당란에 표기하거나 직접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장 등과 함께 접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 장애의 내용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등록증 사본,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사법지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소명자료는 장애인이 소송구조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허용 여부 및 소송구조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다만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에 있어서 소명자료의 요구는 장애의 유무 및 사법지원 신청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것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외견상 장애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에 따른 사법지원 신청의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명자료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에서 장애인에게 사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장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사법지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먼저 당사자 등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수담당직원은 소장, 답변서 등 서류를 접수할 때 제출자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 확인하고, 만일 장애가 있다고 확인되면 위와 같은 장애인 사법지원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접수담당직원이 접수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접수한 서류에 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성명,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기재한 부전지를 첨부해 둬으로써 담당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애가 확인된 경우의 조치

가) 장애 유형별 대응 방법

접수담당직원은 당사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필답이 가능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필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대경이 필요한 시각장애인, 보청기가 필요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원에 비치된 확대경, 보청기가 있으면 이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 등 스스로 이동하기 불편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의 승하차 지점과 법원 사이, 법원 청사 내부 이동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도우미 또는 경비관리대원, 용역근무자,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임시 도우미를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동지원을 담당하도록 하고, 법정 내 이동에 관해서는 실무관이나 경비관리대원 등이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장애 관련 정보의 전달

당사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확인한 접수담당직원은 부전지 등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여 담당재판부에 장애인 당사자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향후 사법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수집으로 오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 사건,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소장 심사 단계

1) 법원사무관등의 소장 심사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이 재판부로 배당되면, 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은 소장 등에 첨부된 당사자의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나 소장 등 기록을 통하여 당사자의 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기록으로 당사자에게 중증의 장애가 있는 사

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도의 사법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이 사법 지원에 관하여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상당한 방법(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발송하거나 유선으로 그 신청절차를 설명하는 등)으로 사법지원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장 심사 시 피고가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절차를 안내하여 소장부분 송달 이전 단계에서 사법지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가 시각장애인인데 자신이 송달받은 서류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기록 표지의 해당 당사자 표시란에 당사자의 장애 유형 등을 기재해 둬으로써 재판장으로 하여금 이를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2)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및 이에 대한 조치 등의 절차

소장과 함께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와 같이 1회 기일 이전에 사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신속하게(늦어도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 전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한 다음, 신청서 여백에 ‘제공 / 일부제공 / 제공불가’ 등의 고무인 형식으로 칸을 마련하고 재판장이 해당란에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론(준비)기일에 사법지원 신청이 있거나(말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일에서 신청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의 취지와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애인이 재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이 사법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예산의 제약 등 여러 여건상 장애인 보조시설, 보조기기 및 보조인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거나 재판의 성격상 신청한 내용에 따른 사법지원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외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편의제공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신적 장애인의 소송능력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고,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소송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히 소송능력 유무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가) 소송능력 유무에 관한 조사

정신적 장애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소송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또는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았는지와 행위능력 유무 등을 살펴야 한다. 소송능력은 소송요건 중 하나이고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직권탐지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필요까지는 없고, 소송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증명을 촉구하면 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고, 같은 법 제55조는 “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정신적 장애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의 제기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의 도입¹⁰⁾, 제한능력자 능력의 확대¹¹⁾,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의 도입, 복수·법인 후견 도입 및 동의권·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개별적 결정, 후견감독인 제도의 도입,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 제3자 보호를 위한 후견등기제도의 도입¹²⁾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 3. 7. 공포되어 2013. 7. 1. 시행되었다¹³⁾. 위 개정 민법 부칙에서는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

- 10)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고 성년후견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민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 신설).
- 11)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 중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하였다(민법 제10조 및 제13조).
- 12)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여公示하도록 하였다(민법 제959조의15, 제959조의19 및 제959조의20 신설).
- 13) 기존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새로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선고요건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구 민법 제9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구 민법 제12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개정 민법 제12조 제1항)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개정 민법 제9조 제1항)
행위능력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민법 제10조, 제5조 제1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5조 제2항).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구 민법 제13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민법 제13조 제1항).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민법 제10조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법정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구 민법 제938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개정 민법 제959조의4 제1항).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개정 민법 제938조 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으나(부칙 제2조 제1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위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위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유의하여야 한다.

(2)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위 개정 민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 민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로서 그 정신적 장애인이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개시심판을 받은 때에는 앞서 본 부칙 제3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정신적 장애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독립하여 소송행위도 할 수 있다.

즉, 피한정후견인인 정신적 장애인이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정신적 장애인의 소송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어떠한 경우에 행위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구 민법상 한정치산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제10조, 제5조 제1항), 후견인은 당연히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제938조), 개정 민법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고 하고,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에 관하여도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제959조의4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938조 제2항, 제4항)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 독립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한정후견인인 정신적 장애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견등기기록을 통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특정한 행위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¹⁴⁾.

(3) 금치산·한정치산선고 또는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정신적 장애인이 금치산·한정치산선고 또는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소송능력 유무를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증명곤란의 구제 및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를 나누고 행위무능력자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정신적 장애인이 금치산·한정치산선고 또는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아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송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금치산·한정치산선고 또는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의 소송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사능력 유무가 중요한 판

14) 2013. 7. 1.부터 시행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호는 가정법원이, 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범위, 그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 나.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범위, 그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 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그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범위를 후견등기기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요소가 된다. 의사능력이란 함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금치산자와 마찬가지로 소송능력이 없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여 그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에서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의사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형식적, 획일적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그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적으로 판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한 행위의 내용, 종류에 의하여 의사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로서 무효인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 또는 소송무능력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와 그러한 자에 대한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인 소송행위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 또는 능력을 취득한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제소과정에서 이미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더라도 바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당사자에게도 불이익하므로 그러한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

소송법 제59조). 제소과정에서는 소송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송능력의 유무에 의심이 가는 당사자도 자기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종국판결에 대하여 유효하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소송무능력자인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그것으로 상소기간은 유효하게 진행된다.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에 대하여는 통상의 상소는 물론이고 확정된 후에는 재심의 소도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판결선고 후에 추인이 있었으면 상소나 재심의 이유가 없게 된다(같은 법 제424조 제2항, 제455조).

다) 특별대리인의 선임

정신적 장애인이 금치산·한정치산선고 또는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또한, 정신적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즉, 금치산·한정치산선고 또는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정신적 장애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 두 조항은 아직 금치산선고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나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정신적 장애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정신적 장애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라) 소장에 법정대리인 기재가 흠결된 경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일반적으로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소송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장에도 법정대리인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법정대리인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민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은 일정한 경우 독립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민법 제938조 제1항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문은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부분에 규정되어 있고, 개정 민법 제959조의4 제1항은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정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과 달리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에 법정대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인 사안마다 후견등기기록을 통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다. 소장부분 등 각종 서류의 송달

소장부분을 송달할 때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전화하거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문구가 추가된 소송절차안내서를 송달하고, 소장 접수 단계에서 상대방이 장애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송절차안내서와 함께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별지 1)을 첨부하여 송달한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과 함께 또는 답변서 제출 이전에 위 안내에 따른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부는 신속하게 사법지원이 제공된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시각적 정보 접근에 대한 사법지원이 가장 절실하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류 송달 시 일반적인 소송서류의 송달 이외에 점자문서, 화면낭독프로그램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사용을 위한 2차원 바코드, 확대인쇄물 등 해당 장애인이 신청한 방식 중 지원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서류 제출자로부터 전자파일을 받아, 점자문서, 화면낭독프로그램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사용을 위한 2차원 바코드 인쇄, 확대인쇄물 등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한 형태로 변환한 다음 이를 종이서류와 함께 제공한다. 다만 수기로 작성된 서류 등 전자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소송서류에 대해 위와 같은 사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재판장이 구체적인 소송유형, 세부적 절차 단계, 전자파일로의 변환이 요청되는 소송서류의 특성, 전자파일 변환 작업에 드는 비용,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나 보조인의 보조 가능 여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간단한 타자 등의 작업으로 전자파일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로써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소송서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신청한 내용에 따라 제공 가능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79조), 피고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

리인에게 소장부분 등을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가 개정 민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본문), 피고가 시각장애인이거나 자신이 송달받은 서류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부분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고, 정신적 장애 등으로 소장이나 소송절차안내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가 시각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알게 된 경우에는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무변론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소장부분 송달 후 소송 절차 진행과 함께 각종 서류 및 판결문 정보 등을 송달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서류 송달과 함께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 제공 방법에 따라 지원하면 될 것이다.

2. 제1회 기일 전

가. 소송구조제도의 활용

재판장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가 정한 바에 따라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한편 2008. 8. 29. 소송구조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22조 제1항 제4호가 신설되어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사법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소송구조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

함으로써 소송구조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⁵⁾.

나. 기일 지정

장애인이 신청한 편의 등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법지원이 가능한 시간을 파악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특히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애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변론은 위와 같은 불편을 고려하여 기일 진행 횟수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기시간은 최대한 줄이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앞뒤 사건을 지정하여 변론시간을 충분히 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증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장시간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정신적 장애인은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 도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통역인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언어장애를 동반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심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증의 지체장애인으로서 휠체어 등을 사용할 것이 예상되고, 법원 청사에 승강기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담당재판부가 사용하는 법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 때에는 가능하다면 1층 또는 접근이 편리한 법정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 사건을 특별 기일로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1층 또는 접근이 편리한 법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법정을 사용하는 다른 재판부와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15) 소송구조제도 이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는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다.

3. 재판기일의 운영

가. 당사자 본인 등에 관한 확인

당사자 등의 장애 유무, 그 정도 및 필요한 지원 방안에 관한 확인은 1차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전 당사자가 제출한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당사자가 미리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장애인이라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사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신청에 따른 편의 제공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신청의 취지 및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우선 신청의 취지만을 조서에 기재하고 다음 기일 전까지 이를 확인한 후 다음 기일에 신청에 대한 조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한다.

신청에 따른 사법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그때 까지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일을 변경한다. 수화통역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기일을 추후 지정하거나 준비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여유 있게 다음 기일을 지정한 후 수화통역인 선정 절차를 거쳐 통역인의 참석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은 지적능력의 부족이나 사고 기능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제공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이나 그 필요성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시에 적절한 신청을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법지원의 유형 및 내용, 그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나. 장애인관련자 등

1) 장애인관련자 및 보조인력

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청각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 등의 지원만으로는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재판에서 소외되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재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변론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장애인관련자라고 하고, 제20조 제2항은 “장애인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재판 참여를 조력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의 유형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이고, 다른 유형은 장애인의 거동을 돕거나 재판 절차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장애인관련자는 장애인과 오랜 기간 의사소통을 하거나 보조하여 온 가족이나 친지 등이 많을 것인데, 장애인이 장애인관련자와 함께 당사자석에 앉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만일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여 도와줄 장애인관련자가 없는 경우로서, 장애인의 거동 및 재판 참여를 도와주거나 심리적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법원은 사법지원의 하나로 장애인에게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인력¹⁶⁾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의 유형별 특성과 필요한 보조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보조인력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

나 아직 그러한 전문인력을 갖춘 세부 법령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원 직원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력 역시 장애인관련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과의 동석이 허용되어야 한다.

2) 보조견 및 보조기구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을 데리고 출석한 경우 장애인 보조견 때문에 재판 진행에 방해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당사자의 좌석 옆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판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 질서유지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58조에 따라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는 장애인의 수족과 마찬가지로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지원

1) 통역의 필요성

청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수화통역이 필요하다. 언어장애가 동반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만일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청각장애에 준하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장애가 없더라도 신체 경직 때문

16) '보조인력'은 '장애인관련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나, 장애인을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법지원의 내용으로서 법원이 제공하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장애인관련자'와 구별하여 '보조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도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조력자, 즉 뇌병변장애인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장애인관련자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장애가 그리 심하지 않고 조금 주의를 기울이거나 되물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신체적·심리적 고려사항(72쪽)을 참고하여 의사소통을 직접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신적 장애인 역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경우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관련자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나아가 장애인인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화통역인을 지정하여 의사소통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법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본문 참조).

당사자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당사자와 대화를 하는 등 직접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역

가) 통역인 선정 및 관리

각급법원은 매년 1월 말까지 각 관할지역의 사정에 따라 농아자의 수화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인 명단을 작성해 두어야 하는데(통역예규 제6조), 이들 통역인 중에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나 재판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정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법정통역이 비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마저 존재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법원의 수화통역인 명단에 등재된 통역인일지라도 사전에 후보자의 통역 경력과 능력, 성실성 등을 검토하여 통역인 지정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¹⁷⁾. 또한, 명단에 등재된 수화통역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소양교육과 전문 법률용어 통역에 관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통역예규 제7조).

나) 통역인 지정 절차

(1) 통역인 지정 결정(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항, 제335조)

당사자가 수화통역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필요성을 살펴 통역 여부를 결정하고¹⁸⁾,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일 개시 후 청각장애사실 및 수화를 이해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수화통역을 결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수화통역인을 지정하는 경우 수화통역인의 경력 사항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통역인이 사용할 수 있는 통역의 방법(농식 수화인지 문법식 수화인지 등)을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이 농식 수화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통역사와 문법식 수화통역사를 동시에 통역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각급법원은 관할지역 내에 선정된 통역인 가운데 농통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통역할 수 없는 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적절한 통역인을 찾아 해당 법원에 통지한다(통역예규 제8조).

17) 판사나 법원사무관등이 실제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추후 제도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일정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자로서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통역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통역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인증해 주는 법정통역인 인증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장애인 관련 소송에서 공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8) 특별히 장애 사실에 관한 주장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수화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임을 주장하면서 수화통역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소장 각하 결정을 하거나 무변론판결 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첫 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화통역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하면 통역인에게는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감정인 지정 절차에 따라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통역인을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2) 대동통역인과 지정통역인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가족 또는 지인이나 자원봉사자 등을 통역인으로 대동하는 경우가 있다(법원이 이러한 대동인을 통역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통역인을 이하 ‘대동통역인’이라고 한다). 대동통역인은 장애인인 당사자의 수화 방식을 잘 알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화통역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별 통역능력에 차이가 크고 법률용어에 관한 지식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대동통역인이 되는 경우에는 통역 과정에서 통역인의 역할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고치거나 보태는 등 왜곡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수화통역인(이하 ‘지정통역인’이라고 한다)은 수화통역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동통역인의 경우처럼 의도적으로 법률상 조언자 역할까지 수행할 의도가 있을 가능성은 작지만, 장애인인 당사자의 수화 방식에 익숙하지는 않으므로 통역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대동통역인과 지정통역인의 위와 같은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고, 변론기일에 원·피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수화통역인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화통역인에게 기본 자질, 전문성 및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수화통역인 명단에 등재된 수화통역인 중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가 대동하겠다는 수화통역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경력 사항 등에 비추어 수화통역인의 자질과 중립성에 특별한 의심이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동통역인을 수화통역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동통역인이든 지정통역인이든 그 능력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언제든지 수화통역인의 교체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유의할 사항은, 법원이 가족 또는 지인이나 자원봉사자 등 장애인이 대동한 자를 통역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정한 재판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행한 장애인관련자로서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의사소통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석한 장애인관련자가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본인신문 과정에서 지정통역인의 통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신문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에 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장애인관련자는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장애인관련자의 직접적인 소송행위를 제지하거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관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관련자가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신문 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3) 통역인에 대한 기피 신청(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항, 제336조, 제337조)

수화통역인이 성실하게 통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수화통역인이 통역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통역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항, 제336조). 이때의 기피신청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하는데, 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항, 제337조).

다) 통역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수화통역인 등에게 미리 교부할 서류

(가) 통역인 안내문¹⁹⁾

법정통역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수화통역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서는 기일에 앞서 수화통역인에게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함께 그 재판에 특이한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²⁰⁾.

(나) 소송관계 서류

재판부는 수화통역인이 사건의 개요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통역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수화통역인에게 ‘통역인 안내문’과는 별도로 소장과 답변서의 사본 또는 요약본 등을 미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동통역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증인신문이나 당사자본인신문에 앞서 증인신문사항이나 당사자본인신문사항이 미리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부분이나 사본도 미리 수화통역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수화통역인의 유의사항

수화통역인이 통역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임의로 바꾸거나 수화통역인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화통역인에게 미리 주의를 주어야 하는데, 수화통역인의 선서 직후 앞서 전달한 ‘통역인 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구두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화통역 진행 중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판장이 바로잡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통역인이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것, ② 통역인 스스로 당사자나 증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한 통역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스스로 재판부에 사유를 알릴 것, ③ 통

19) 별지 4. 통역인 안내문 참조

20) 2013. 7. 현재에는 아직 수화통역인용 통역인편람이 발간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간되기 전까지는 외국어용 통역인편람에 수록된 통역인의 일반적 주의사항, 각종 절차 안내·설명 등을 활용하면 수화통역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역대상자와 사적 교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역대상자로부터 재판 결과 예상, 변호인 선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경우 사전임을 전제로라도 개인 의견을 밝히지 말 것, ④ 법정 통역의 특성상 재판부나 당사자의 진술은 사리에 어긋나거나 어법에 틀리더라도 있는 그대로 통역하고 의역 등 사건이 개입된 통역을 하지 말 것, ⑤ 통역하기에 용어가 어렵거나, 대화가 빠르고 길어 정확한 통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장에게 이를 알려 단어나 어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역하도록 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3) 소송관계인 등의 유의사항

당사자본인신문 또는 증인신문 시 질문 방법과 관련하여 문제 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재판 진행을 위하여 하는 발언이나 보충 질문, 기타 소송관계인 등이 법정 내에서 하는 모든 발언에 적용된다.

(가) 1문 1답의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문한다.

신문사항에 포함된 전제사실이 길어지면 수화통역이 어려워지거나 답변해야 할 장애인으로부터 적절한 대답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지므로, 신문사항은 간결한 형식으로 물어야 한다. 반대신문에서 주신문 당시 이미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진술을 재차 확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답변자가 착오를 일으키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

(나) 가능하면 쉬운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해하기에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물어야 하고 다의적인 의미가 있는 애매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한다.

라) 수화통역인 등의 좌석 배치

통역대상자와 통역인이 협의하여 통역인 자리를 정하도록 하되, 청각장애인은 발화자의 입 모양을 보고 의미를 해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칙적으로 청각장

애인이 재판장과 통역인을 다 바라볼 수 있고, 재판장 역시 통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 예를 들면, 법대와 당사자석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양쪽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통역인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과 재판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그림 1). 통역인의 자리는 증인석을 활용하거나 보조의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당사자신문이나 증인신문 등으로 통역대상자의 위치가 증인석으로 변경되는 때에도 통역대상자와 통역인이 협의하여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청각장애가 있는 원고 당사자신문을 위해 원고가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길 때에는 수화통역인은 증인석에 있는 원고와 마주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고(그림 2), 만약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인이 당사자석 쪽으로 약간 몸을 돌려 증인석과 원고 당사자석을 번갈아 보며 신문 내용을 통역하는 것이 좋다.

【그림 2】



다만, 청각장애인인 방청객이 수화통역을 요청하는 경우 방청객을 위한 수화통역인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때에는 수화통역인이 방청객 쪽으로 조금 몸을 돌려서 통역하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 통역인의 선서

수화통역인은 허위 통역을 할 경우 위증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재판장은 수화통역인에게 허위 통역의 벌을 고지하고 선서를 하도록 한다(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항, 제338조, 제333조, 제320조).

장애인인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판진행 과정 전체를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 선서는 재판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증인이 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이 필요하다면 증인선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통역인 선서를 하면 된다.

수화통역인이 선서한 직후에는 재판장이 수화통역인에게 법원에서 제공한 통역인 안내문을 읽어보았고 그 유의사항을 숙지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안내문을 사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법정에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바) 통역에 대한 이의

통역예규 제14조는 “외국인 피고인이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신문자가 법정에서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과 통역을 다시 한번 시행하게 하고, 피신문자가 재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역인에게 녹음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도의 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통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는데, 수화통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역과정을 녹음, 녹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화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역과정을 녹음, 녹화하여 그 녹음물, 녹화물을 보관하고 당사자가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신문과 통역을 다시 한번 시행하게 하거나 통역인에게 녹음물, 녹화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통역 비용 부담자

재판기일에서 수화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누가 통역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 제6항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한 내용이므로 궁극적으로 국고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② 일반 민사재판 비용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해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되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제2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위 각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화통역 비용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한 내용이므로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아직 국고 부담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50개 주 중 40여 개 주에서 민사재판의 수화통역인(Sign Language Interpreter) 비용은 해당 정부(county, city, state 등)의 재정에서 지출하여 부담하고(이 경우 그 비용을 장애가 있는 당사자 측에게 전가하거나 소송비용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델라웨어주, 컬럼비아주, 조지아주, 메릴랜드주, 미시시피주, 네바다주, 버몬트주, 버지니아주, 와이오밍주 등에서는 법원은 재량에 따라 수화통역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거나 소송비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제73a조 제2항)은 통역 비용뿐 아니라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위하여 변호사와 필요한 접촉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통역 비용도 연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입법목적이 유사한 장애인평등법과 장애인기본법을 각 두고 있으나 그 법률 및 민사소송 관련 법률 등에는 수화통역 비용의 국고 등 공적 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제 민사재판에서 수화통역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일반적 비용부담 원칙(패소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아) 문자통역

청각장애인인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이외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문자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단서). 문자통역은 독해, 필기 능력이 있는 청각장애인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이므로 일단 청각장애인의 독해, 필기 능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화통역 또는 보청기대여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더라도 이와 함께 문자통역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전문적인 법률용어에 관한 수화통역의 한계를 고려하면, 문자통역을 병행하는 것이 통역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현재 법정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문자통역 방법은 속기 화면 공유 방식이다. 문자통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재판부는 문자통역을 할 속기사를 지정하

고, 법정스크린을 통하여 문자통역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정 시설을 준비한다. 만일 청각장애인인 당사자가 직접 단말기를 이용하여 답변을 적고 그 답변 또한 법정스크린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당사자석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진술할 내용을 종이 등에 적은 다음 이를 속기사에게 전달하여 속기하게 함으로써 법정 스크린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화통역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통역을 위해서는 간결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특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화통역과 동시에 문자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자가 수화로 대화한 이후 스크린에 나타난 문자통역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마다 문자통역 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자통역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오류를 지적하여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문자통역 기록은 조서 기재와는 다르므로 어법이 틀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진술 그대로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자통역 기록은 보관하고 당사자가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변론기일 진행

1) 당사자의 불출석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제2항),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지연을 방지하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당사자 또는 법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중증의 장애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면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의 지체장애인인 원고가 기일통지를 받고 기일에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시간이 지체되어 도저히 지정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렵겠다는 연락을 해 온 경우에는 일단 다음 기일을 언제로 지정하면 출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지 않아 해당 사건의 기일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기일 외에서 미리 상대방인 피고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물어 기일을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이 기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현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이에 해당한다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참조). 만일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기일을 시작한 이후 장애인 당사자의 불출석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상대방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설명에도, 피고가 기일 연기에 반대할 때에는 무리하게 기일을 연기하기보다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기한 진술 간주 제도를 적용하여 변론을 진행하거나 경우에 따라 양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다음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출석할 수 있는 시간 및 장소에 관하여 미리 장애인인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쉬운 법정을 확보하여 그곳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을 위한 신체적·심리적 고려사항

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1)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뇌 손상으로 인한 지체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은 언어능력의 손상 때문에 언어장애가 동반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여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청각장애에 준하는 지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어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되물어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다시 반복해 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그 후에도 계속 이해하기 어려우면 해당 진술을 손으로 쓰거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제안한다.
- ②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 말한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한다²¹⁾.
- ③ 뇌병변장애인은 긴장을 할 경우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뇌병변장애인은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 첫마디를 발음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라는 것이지요?’ 라고 장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추측하여 묻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⑤ 뇌병변장애인은 말을 할 때 얼굴이 일그러지고 톤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이

21) 뇌성마비 장애인 등의 말을 가족·친지 등 가까운 사람만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 재판장은 동행한 장애인관련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장애인 진술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재판장은 미리 장애인관련자에게 장애인이 한 말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옮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고, 장애인관련자가 장애인의 진술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진술한 내용 전체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청력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말이 제대로 옮겨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장은 장애인관련자가 옮긴 말을 요약하여 다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진술 취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글씨를 읽을 수 있다면, 장애인관련자가 옮기는 말을 속기하여 실시간으로 법정스크린으로 보여주면서 그 정확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때문에 재판장에게 나쁜 인상을 주거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우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장은 표정과 어투 등에 특히 유의한다.

- ⑥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유형, 정도에 따라 지적장애 등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활동을 하는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중추신경계의 손상 때문에 신체적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뿐 지적장애나 정신적 장애는 없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 점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⑦ 어려운 법률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2) 절차 진행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언어장애가 없더라도 지체·뇌병변장애인은 신체의 경직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때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체·뇌병변장애인의 말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활동을 조력하여 줄 장애인관련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동석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등의 행위나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장시간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체력적 소모가 큰 활동일 수 있고 자주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판장은 절차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장애인에게 휴식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물어본 다음 그에 맞추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휴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때때로 의사를 확인하여 휴식시간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나) 시각장애

재판장은 장애인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이나 절차의 진행 정도 및 소송관계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구술로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받았는지를 확인

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은 목소리만으로 누가 말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재판장이나 상대방 당사자, 변호인 또는 증인 등 절차 진행 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힌 다음 내용을 말하는 것이 좋고, 재판장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와 같은 발언 방식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각장애인은 소리로 상황을 파악하므로 법정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재판장이 절차 진행 도중 기록을 찾아서 읽거나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에 관하여 배석판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기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관하여 지금 재판부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등으로 알려 말소리가 없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균형감각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재판장은 시각장애인인 당사자 등이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때 의자의 위치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다)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그 정도에 따라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경우, 청력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소리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농자) 및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난청)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재판 관여자 가운데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인지를 물어 확인하는 것이다.

청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통역인을 지정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천천히 발음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도록 하면 의사소통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장애상황이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곤란하고, 중간중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구화를 하는 경우 재판장을 포함한 발화자는 고개를 숙이거나 기록 등을 보면서 말하지 말고 그 장애인을 바라보고 입모양을 정확히 하여 또박또박 발음하도록 한다. 어려운 법률용어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쓰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며,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약간의 여유를 두어 청각장애인이 그 의미를 파악했는지 살피고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한다.

수화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통역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및 통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재판장은 청각장애인을 바라보고 말을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입술이나 표정을 통하여 대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통역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이나 해당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상의 특징 등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기존 통역인의 계속된 출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천천히 또박또박 발언하거나 내용을 자주 확인하고 반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일 진행 시간은 넉넉히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

(1) 시간적 배려

정신적 장애인이 당사자인 경우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참작하여 충분한 변론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신적 장애인은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식시간을 자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 빨리 말하기가 어려우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2) 쉬운 용어 사용

정신적 장애인의 지적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상적인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정신적 장애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반복

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시간에 쫓겨 빠른 속도로 말하거나 빨리 말하도록 다그치는 것은 곤란하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질문을 하게 되면 당황하여 무조건 재판장의 말에 동의하는 등 부정확한 진술을 할 우려가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암시에 동조하거나 순응적인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예/아니오’식의 폐쇄형 질문형태를 삼가고 개방형 질문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장애인관련자의 동석

정신적 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행한 장애인관련자가 재판에 참여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동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적극적인 석명권·구문권 행사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적 장애인인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취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석명권·구문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하여 이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정신적 장애인인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증명이 미비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

(5) 진술금지의 재판 및 변호사선임명령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은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로서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능력이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 없이 법원에 출석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소송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요구되는 소송능력과 달리 변론능력은 일반적으로 원활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본다. 우리 법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고 본인소송이 허용되므로 소송능력이 있는 당사자는 누구나 변론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 당사자가 법원의 소송지휘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변론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송능력이 있는 정신적 장애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본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변론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장애인이 동행한 장애인관련자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법원이 제공한 보조인력 등의 도움에도 여전히 절차 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인은 변호사 선임명령의 취지 또는 선임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명령에 즉시 따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하는 것보다는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용에 관한 예규 제2조 제2항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등 실무처리 중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서의 작성

조서는 심리의 방식과 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보고문서로서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고 상급법원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므로, 장애인이 소송관계자인 경우 그에 관한 특유한 소송절차가 명확히 기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기일에서 사법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의 취지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소송기록에 남기도록 한다.

신청에 따라 수화통역인이 지정되거나 문자통역이 제공될 경우 출석한 통역인의 성명이나(민사소송법 제153조 제4호) 문자통역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사실 등도 조서에 기재한다.

4) 변론의 속기와 녹음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생성된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가 된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위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열람·복사 및 교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를 열람하거나 혹은 낭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2조, 제157조).

소송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정확한 의사소통 여부나 재판 진행 경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론의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5) 소송대리인이나 방청객이 장애인인 경우

가) 소송대리인이 장애인인 경우

법원이 장애인인 소송대리인에게도 장애인 당사자에 준하는 정도의 사법지원

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다. 헌법상 소송대리인의 재판조력권이 보장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사법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에 소송대리인인 장애인이 제외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같은 수준의 사법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인 소송대리인이 신청하는 사법지원의 종류,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나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방청객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방청객일 경우에도 사법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므로, 위 조항만으로는 장애인 방청객에 대하여 사법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 직접적인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헌법상 공개 재판의 원칙(제109조 제1항) 구현, 방청객인 장애인의 알 권리(제10조) 및 일반적 평등권(제11조 제1항)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2항)는 일반적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장애인 방청객을 위하여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인 방청객이 법정 방청을 위하여 편의제공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인은 해당 재판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인데, 공개 재판의 원칙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해관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 방청객을 위한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거나 업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 있어서도 무조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방청객에 대한 편의제공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거나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되는 등 소송 당사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 증거조사절차

1) 증거신청

장애인이 소송당사자나 증인인 때에도 증거신청절차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진행하되, 시각장애인 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이 소송당사자나 증인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가) 시각장애

법원사무관등은 시각장애인 당사자 사건에서 상대방의 증인신문 신청이 채택되어 상대방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한 경우 종이로 출력된 증인신문사항 외에 해당 증인신문사항의 전자문서 파일을 요청하여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신청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원사무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 증인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외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연락을 하여 증인신문절차를 안내하고 출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정신적 장애

당사자가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에는 증거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안내하여 적절한 시기에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원은 당

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92조) 그 활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2) 증인신문

가) 증인의 장애인관련자

장애인인 증인이 의사소통이나 활동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관련자를 동반하여 출석한 다음 동석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관련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제4조 제1항 제5호) 원칙적으로 장애인관련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전에 장애인관련자가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질문이나 답변의 의미를 왜곡하여 전달하지 않도록 미리 장애인관련자에게 주의를 시켜야 하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절한 소송지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관련자의 공정성에 의심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당사자나 상대방 혹은 그 대리인이 장애인관련자의 관여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 제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애인관련자의 계속적인 동석을 불허하고 증인신문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유의사항

(1) 지체장애

지체장애인이 증인일 경우 증인이 장시간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으므로, 증인신문이 길어지면 증인에게 어느 정도의 휴식이 필요한지를 물어 휴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21조 제3

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선서서 낭독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신하게 한다.

한편 당사자가 시각장애인일 경우 재판장은 증인의 위치를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에게 서증이나 도면 등을 제시하면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제시된 서증이나 도면이 무엇인지 특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3)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

증인이 청각장애인 또는 지체·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한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의 장애 상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사법지원을 신청하면 조서에 그 신청의 취지와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재한 다음 당사자에 대한 장애인 사법지원에 준하여 지원절차를 진행한다.

증인 신청 시 증인의 장애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후 증인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와 함께 장애인 사법지원안내문을 송달한다. 증인이 장애인 사법지원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장애인 사법지원에 준하여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사법지원이 준비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문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

증인에 대하여 수화통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방청객이 장애인인 경우보다 통역인의 공정성 확보가 더 문제 될 수 있다. 대동통역인을 활용할 것인지, 법원이 지정하는 지정통역인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원·피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재판장이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지정통역인을 활용하되, 쌍방이 대동통역인을 활용하는 데에 이의가 없고 통역인의 중립성과 통역능력 등에 문제가 없는 때에는 대동통역인을 활용할 수 있다(62쪽 참고).

법원은 통역인 명단에 등록된 통역인 중에서 수화통역인을 지정하되, 등록된 통역인의 수가 많지 않을 때에는 사전에 통역인의 일정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추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지정통역인에게는 변론기일 전에 수화통역인의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²²⁾, 소장과 답변서의 사본 또는 요약본 등을 미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은 증인선서서를 보고 수화로 선서하고 이를 수화통역인이 통역하는 방법으로 선서를 할 수 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 대하여는 수화통역인이 증인선서서의 내용을 수화로 하면 청각장애인이 이를 따라 수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청각장애인에게 미리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²³⁾.

(4)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아닌 사람을 신문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집중력 감소 등을 참작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면서 진행해야 하며, 수분보충, 투약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추상적인 전문용어나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가능한 쉽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²⁴⁾.

- ①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말하며 가능한 한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 ② 신문할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 시간, 계절, 인과관계 및 시간적 선후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지적 발달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분부분 나누어 의미를 전달한다.
- ④ 가능한 경우 그림이나 동작 등을 사용하여 쉽게 의미를 전달한다.
- ⑤ 가능한 한 인칭대명사나 법정에서 사용하는 명칭 대신 고유명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가령, 원고, 피고, 증인이라고 하기보다 이름을 사용하도록 함).
- ⑥ 먼저 비유도적인 개방형 질문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진술에서 나온 내용을 기초로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진

22) 별지 3. 수화통역인 안내문 참조

23) 기타 통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9쪽 이하 참고

24) 자세한 질문요령에 관해서는 형사소송 부분 131쪽 이하 참고

술을 끌어내도록 하며, “예/아니오”식의 단답형 질문과 유도신문은 피한다.

- ⑦ 선택형 질문은 될 수 있으면 피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하다면 개방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을 함께 사용한다(가령, “사건을 목격한 때가 아침인지, 저녁인지, 아니면 다른 어느 때인지”와 같은 질문 형식).
- ⑧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단어나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반복해서 전달하되, 장애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꾸지 않도록 주의한다.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판장은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개별적·구체적이지 아니하거나 유도신문이 포함되어 있는 등 부적합한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 제3항 참조).

재판절차에서 정신적 장애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렵고 질문자의 질문 의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도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진술하는지, 어떤 질문형태로 물어보는지에 따라 진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도신문을 하게 되면 유도한 대로 대답하게 된다. 이러한 진술 특성 때문에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진술 왜곡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장애인의 진술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인신문에 앞서 당해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정도, 비언어적 표현, 대답하는 특성, 말하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절차 참여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진술 특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증인인 정신적 장애인의 개별적인 진술 특성을 이해한 후 당사자신문이나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면 특이한 진술 때문에 잘못된 심증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정신적 장애인인 당사자, 증인 등에게 직접 질문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참조).

3) 음성·영상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3항은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성·영상자료(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등)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상대방이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당사자인 경우 재판장은 장애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 신청인에게 음성자료의 녹취서와 녹음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장애인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증거조사 이전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가 시각장애인인 사건에서 상대방이 영상자료를 증거로 신청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위 규칙 제121조 제3항에 의하여 신청한 당사자로 하여금 영상자료를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특히 각 장면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표현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시각적인 이미지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이미지 자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면의 왼쪽 위에 있다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걸어나가 화면에서 사라졌다거나, 어떤 남자가 화면의 왼쪽 아래에 서 있고 어떤 여자는 중앙에서 그 남자를 바라보고 서 있다는 등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영상의 내용 등을 설명하는 서면은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게 하거나 법원이 이를 변환하여 송달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음성·영상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이때, 청각장애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의사소통보조인으로 하여금 앞에서 본 요령대로 말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사법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검증기일을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판결의 선고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판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으나, 장애인이 당사자이고 그가 변론종결 시 판결선고일에 출석할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판결선고일에도 장애인 사법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당사자를 법대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고 출석 사실을 조서에 기재한다(사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 출석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당사자가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 판결의 내용과 상소기간, 상소방법 등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여 상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정보를 송달할 때 기본적인 종이서류를 송달하는 이외에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사법지원 신청 당시 신청한 형태로 변환한 자료도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재 판결문에는 음성변환출력용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다.

5. 화해·조정 절차

화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이 당사자인 경우의 변론 등 기일 진행 절차와 유사하다.

화해·조정 기일을 지정할 경우에도 필요한 장애인 사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기일 및 장소를 지정한다.

다만 화해·조정 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장애인에게 화해·조정 절차의 의미 및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화해·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송당사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수화통역인이 화해·조정 절차의 의미를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도록 쉬운 의미로 풀어서 표현하거나 수화통역인과 통역 방법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에게 진정한 화해·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화해·조정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소송절차에서보다 자유롭게 발언하게 되므로 자칫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위험이 있다. 화해·조정 절차에서도 변론기일 진행과 마찬가지로 발언은 쉬운 표현으로 정확하게 천천히 하고, 일방 당사자의 진술이 끝나면 통역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조정이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장이나 재판장은 조정조항을 당사자에게 설명하면서 쉽게 풀어서 알려주고 제대로 이해하고 조정이나 화해에 이르렀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

III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장애인과 형사소송
2. 공소제기 전
3.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4. 공판기일의 심리
5. 국민참여재판
6. 판결의 선고



III.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장애인과 형사소송

가. 장애인의 형사소송능력

1)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가) 소송능력

형사소송에서 소송능력이란 피고인이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이 제26조에서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라고, 제306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소송능력을 위와 같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피고인에게 뇌병변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특히 소송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소송능력 유무를 결정하여

25) 이는 민사소송법이 소송능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의하도록 하는 것(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과는 대비되는데, 형사벌과 관련한 자기책임의 원칙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소송능력이 문제 된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집중력이나 판단력에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은 명료하여 지각 및 기억력에도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끝나고 치료감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의 상고 포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감도10 판결).

나)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소송능력이 없는 자연인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소송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즉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

그러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 한편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사건²⁶⁾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가) 소송능력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

26) 예를 들어 담배사업법 제31조는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제2항·제11조·제16조·제32조 제2항·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과 동법 제5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에 있어서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도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의 의미,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법률행위로서 고소에는 피해의 의미와 고소에 따르는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고소능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므로, 고소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고소는 무효이다.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 4962 판결²⁷⁾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에 있어 앞에서 본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의사표시나 그 철회행위는 효력이 없다.

27) 강간 피해 당시 14세의 지적장애인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 담임교사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비로소 그들로부터 고소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 듣고 고소에 이른 경우, 위와 같이 설명을 들은 때 고소능력이 생겼다고 본 사안이다.

나. 장애인의 소송관계인

1)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한정치산선고 또는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래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에게 법정대리인과 마찬가지로의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변호인선임권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신청권 (형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보석청구권 (형사소송법 제94조)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권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또는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상소권(형사소송법 제340조, 제341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상소의 포기·취하에 대한 동의권 (형사소송법 제350조)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상소취하 (형사소송법 제351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나) 보조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위와 같은 지위 또는 권한을

부여받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보조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지 않은 한 독립하여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항).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신고는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 공소제기 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2항).

다)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피고인이 장애로 인하여 본인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거나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에도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한정치산선고 또는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래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에게도 법정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p>고소권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p>	<p>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p>
<p>진술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p>	<p>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미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p>
<p>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권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p>	<p>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p>
<p>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p>	<p>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나) 피해자의 변호사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기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에 한정하여 시행하던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제도²⁸⁾를 성폭력범죄 피해자 일반으로 확대하였다.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같은 조

28)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3. 16. 시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 및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6)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인은 수사기관 출석권(제18조의6 제2항),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 공판절차 출석권(같은 조 제3항)을 비롯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같은 조 제4항)을 갖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제3항),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같은 조 제5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따라서 장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인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필요적 선정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장애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수행 태도를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선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3) 그 밖의 관계인

가) 장애인관련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장애인관련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

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을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도 이러한 장애인관련자가 장애인인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동석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을 돕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장애인관련자에 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장애인인 피고인 또는 증인이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여 장애인관련자를 대동할 경우 이들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신뢰관계인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위 규정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피해자의 경우),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4조의3 및 제126조의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

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다) 진술조력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증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고(제37조 제1항), 법원은 증인이 위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하며(제35조 제1항),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항),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성폭력범죄가 아닌 범죄의 피해자인 증인이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실무에서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아닌 증인이 같은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 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우에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선임에 관한 법령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이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도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 성폭력범죄가 아닌 범죄의 피해자인 증인 또는 피해자 아닌 증인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력을 제공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장애인지원업무 담당자로 지정하거나 채용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소제기 전

가. 영장실질심사

1) 피의자심문기일 진행 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의 의사소통·표현 관련 장애 유무를 확인하고,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법관이 수사기록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 및 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하였다면 부전지 등 적절한 방식을 활용하여 심문기일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법관 역시 필요한 사법지원 내용 및 그 준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피의자를 위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자의 장애 상태 및 정도를 알리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인을 미리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아닌 사람과 비교하여 보면 장애가 있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장애인임이 확인된 피의자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관한 안내문’(별지 5)을 변호인을 통해 미리 교부하거나 늦어도 심문기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한다.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심문기일통지서는 음성변환출력용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어 송달되나,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2에 의하면 서면 이외에 구술·전

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심문기일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심문기일을 지정한 법관은 기록 등을 통해 피의자가 시각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송달 방법과 함께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맞는 적절한 방법(예: 전화 통지 등)으로 심문기일통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심문기일에서 피의자의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이 필요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신속히 통역인명부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화통역인 후보자를 골라 보고하게 한 후 수화통역사를 지정하고, 문자통역이 필요하다면 법원사무관등에게 심문이 진행될 법정에 문자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속기사 등이 심문기일에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의자심문기일의 진행

가) 인정신문단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상의 장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피의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음이 의심되는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는 법관은 인정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 확인한 다음, 법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 유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을 느낄 만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포괄적 의미의 장애를 뜻한다. 그러므로 심문을 담당하는 법관은 피의자에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한 곳이 있나요?” 또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운 점이 있나요?” 등으로 질문하여 피의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피의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한 경우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되므로,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피의자가 신청한 지원방법이 피의자심문단계에서 바로 제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와 같은 사유를 설명하여 주고, 심문 조서에 피의자가 신청한 지원 및 조치 내용을 기재하여 두는 것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1) 통역인 지정

피의자에게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어 수화통역인이 필요함에도 심문기일 이전에 수화통역인 지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사와 피의자 등의 의견을 물어서 통역인명부에서 수화통역인을 지정하여 심문을 진행할 수 있는 일시로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피의자가 스스로 수화통역인을 대동한 경우에는 수화통역인과 피의자의 관계, 통역인의 자질과 능력, 심문절차 관여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대동한 통역인으로 하여금 선서 후 통역을 하게 하거나 혹은 새로 기일을 정하여 통역인명부에서 수화통역인을 지정하여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대동한 통역인이 심문기일에서의 통역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인 피의자는 의사소통 보조를 위한 장애인관련자로서 동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역을 담당한 수화통역인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다시 통역인으로 지정하는 데 대하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별도로 수화통역인을 지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그 통역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의사를 존중하여 다른 수화통역인을 지정하여 심문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는 등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09조, 제

71조, 제71조의2에 의하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되,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하며, 인치 받은 피의자를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경우에도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를 위한 수화통역인을 지정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정 기간을 준수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신뢰관계인 또는 장애인관련자의 동석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0항, 제2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서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장애로 인하여 변호인과의 접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피의자의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여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 피의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으로서 동행한 장애인관련자의 동석을 요구할 경우 또는 동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의자에게 장애인관련자의 동행 여부를 물어 장애인관련자를 심문절차에 참여시켜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피의자심문의 진행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함에 있어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히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

심문을 담당하는 법관은 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영장의 내용을 낭독해 주고, 체포 당시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장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피의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의 제시’는 피의자가 그 영장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영장 집행 단계에서 영장 제시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시각장애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체포될 수도 있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는 영장 집행 중 체포의 이유 등 고지 과정에서도 문제 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하는 법관은 영장의 제시 여부뿐만 아니라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도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피의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2) 청각장애인

피의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에 체포 당시 그 청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에서 본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이 고지되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보여주어야 하고, 수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수화로 알려주어야 한다(현재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청각장애인용 미란다 원칙을 표준 수화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체포 이전에 피의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

을 알게 된 즉시 그 피의자가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위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심문 시 확인해야 한다.

(3) 정신적 장애인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알려주는 경우 정신적 장애인의 지적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상적인 법률 용어 사용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정신적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며, 피의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반복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말하거나 정신적 장애인에게 빨리 대답하도록 다그쳐서도 안 된다.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무조건 질문자의 말에 동의하는 등 부정확한 진술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암시된 내용에 동조하거나 순응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예/아니오’식의 폐쇄형 질문 형태를 삼가고, 보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체포·구속적부심, 보석허가결정을 위한 심리

체포·구속적부심이나 보석허가결정을 위한 심리절차에서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유의할 사항은 대부분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다만 구속적부심이나 보석허가결정의 경우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그 심문 당시 제공된 장애인 피의자를 위한 사법지원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체포·구속적부심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피의자가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통하여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자의 장애 상태 및 정도를 알리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인을 미리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포·구속적부심절차에 관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6항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포·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가 장애인관련자의 동석을 요구할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보조 등을 위해 심사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장애인관련자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의자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가. 공소장부분 등의 송달

공소장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장애 여부가 확인된 경우 재판장은 장애인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소장을 접수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분과 함께 피고인의 의견서 양식을 함께 송달하는데, 피고인이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 (별지 1),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별지 2) 및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별지 6)을 함께 송달함으로써 피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법원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소장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출력용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종이에 인쇄된 형태의 공소장부분을 그대로 송달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 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이 규정한 사법기관의 의무에 비추어 피고인의 시각장애로 인하여 공소장 변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통하여 피

고인에게 공소장부분의 변환 의사 및 원하는 양식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공소장의 변환을 원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피고인이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소장부분과 함께 다시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통역예규 제4조는 공소장 비고란에 피고인이 국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소장에 대한 번역문이 첨부된 때에는 국문 공소장과 함께 그 번역문을 보내고, 공소장에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에게 공소장 번역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제1회 공판기일의 준비

1) 국선변호인

가) 필요성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두변론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형사소송절차, 즉 기일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제283조의2 제2항), 재판장의 인정신문(제284조), 검사의 공소사실 등에 관한 모두진술(제285조),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및 이익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제286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절차에서의 원칙적 낭독(제292조) 등의 절차가 모두 구술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구두변론에 의한 공판심리절차에서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신문내용이나 증거조사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5호 관련

법원은 피고인이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5호).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경우 각 책임 무능력 또는 책임감경 사유로 인정하고(제10조), 농아자의 경우 책임감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제11조).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규정한 것은 피고인의 부족한 방어능력을 보충해 주기 위한 취지로서 형법상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취지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아자나 심신장애의 범위에 관하여 형사책임 감경·면제 사유보다 넓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관련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예를 들어 말을 배운 후 청력을 잃은 청각장애인의 경우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등 시력 또는 청력의 상실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하여 그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시각장

애인인 경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위 예규에서 규정한 시각장애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 등을 통하여 시각 자료를 통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편의제공 준비

재판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알려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장애 상태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 유형별 준비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각장애 · 언어장애

(1) 수화통역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81조는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청각 · 언어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별지 3)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수화통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통역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화통역인을 지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통역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접견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며 통역을 신청한다면, 수화통역인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역을 담당할 수화통역인을 공판절차의 통역인으로 다시 지정하는 데 대하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은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다. 수사단계에서 통역

한 수화통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통역인 앞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사단계에서 통역하지 않은 사람을 수화통역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고, 특히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각장애인이 문법식 수화를 구사하지 못하고 농식 수화만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식 수화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인이 필요하고, 농식 수화통역인에게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농식 수화통역인과 문법식 수화통역인의 이중 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적정하고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법원은 지정된 통역인에게 ‘통역인 안내문’(별지 4) 등 통역인 유의사항을 가능한 방법²⁹⁾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공소장부분을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미리 교부하여야 하며(통역예규 제4조 제3항 참조), 그 밖에도 검사와 변호인으로부터 공판정에서 사용할 신문사항,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미리 제출받아 수화통역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증인과 수화통역인이 직접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피고인 또는 증인에게는 수화통역인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급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재된 통역인 후보자 중 해당 피고인 사건에 적합한 통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해당 피고인 사건에 적합한 통역인을 찾아내어 위 법원에 통지한다(통역예규 제8조 참조).

(2) 문자통역이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으로 법률용어 및 복잡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어렵거나 청각장애인의 수화·구화 등의 구사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속기를 이용한 문자통역이 필요하다.

형사소송규칙 제73조는 ‘증인이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는 때’ 서면으로 문

29) 64쪽의 주20) 참조

고 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화 등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고 독해·필기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통역을 지원하는 것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속기 화면 공유 방식에 의한 문자통역 방법은 민사재판절차와 같다(69쪽 참조).

나)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이나 그 필요성, 신청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여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진술에만 의존하여 장애인관련자의 참여,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편의제공이 필요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사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전 유의할 사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이를 알려 공판기일 소환장 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증거제출 전 수사 서류의 열람·등사

1) 피고인이 직접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시각장애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국선변호인 선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열람·등사가 모두 문제 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 문제 된다(같은 항 단서 참조).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는 하였으나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이 말하는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 해당하는지의 해석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한 이상 장애인이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26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 및 검사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는 형태의 서류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형식(점자, 전자파일 또는 글자크기의 확대 등)으로 변환된 형태의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하거나 서면 교부를 허용하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2) 변호인이 등사를 신청한 경우

변호인이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등사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특정한 등사의 방법을 지정하여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변호인이 등사한 서류 등을 피고인이 함께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상(특히 장애

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26조 제6항 참조) 시각장애 피고인에 대한 기록 접근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라. 공판준비기일의 활용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의 장애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한편, 그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추어 공판기일 진행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시각을 통한 인식이 요구되는 증거의 조사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통역인 선정 절차 때문에 제1회 공판기일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정신적 장애인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공판기일에서 집중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 장애 유형에 맞는 재판진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활용할 수 있다.

마.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불구속 상태인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특히 이동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하여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전후 사건과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증의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장시간 동안 앉아 있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도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언어장애를 동반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심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 청사에 승강기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뇌병변장애인이 법정에서 출석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1층 소재 법정이나 그 밖에 이동과 접근이 편리한 법정을 확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도 공판 진행에 있어 다른 사건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기일 지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 잦은 휴식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빨리 말하기가 어려우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일 지정 시 다른 사건과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둘 필요가 있다. 같은 이유로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같은 시간대에 다른 사건과 중복하여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공판기일의 심리

가. 장애 유형별 유의사항

1) 시각장애

재판장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효율성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장애인인 피고인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증거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를 낭독의 방법에 의하거나, 내용 고지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를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판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길어질 수 있다.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이러한 점에 유의한다.

2) 청각장애 · 언어장애

통역해야 할 용어가 어렵거나, 대화가 빠르거나 긴 경우 수화통역인이 정확하게 통역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판장은 수시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통역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대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너무 길지 않도록 조절하고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판장은 통역 시작 전 수화통역인에게 정확한 통역을 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통역을 위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재판장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수화통역이 아니라 문자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판장은 수화통역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역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장은 기소요지서, 변론요지서, 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등이 기일 전에 제출된 경우 참여사무관등을 통하여 그 부분을 통역인에게 송부하여 통역인으로 하여금 미리 통역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통역예규 제12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녹음·녹화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이와 같이 작성된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은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는데(같은 조 제2항),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이외에는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형사소송규칙 제39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3항). 다만 통역예규 제13조에 의하면 참여사무관등은 외국인 피고인 사건의 심리 과정 중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여야 하고, 그 녹음물은 위 형사소송규칙 제39조에 불구하고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 외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어 수화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거나 통역예규 제13조를 준용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녹음 내용은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보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할 필요도 있으므로, 재판장은 수화통역이 있는 심리의 녹음물 보관 기간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화통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통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서는 녹음보다 녹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영상녹화에 관한 물적 설비 및 인력이 제공될 수 있는 경우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장애인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영상녹화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영상녹화를 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인 장애인에게 통역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지정통역인을 활용할 것인지 피고인과 친숙한 대동통역인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정통역인을 활용하되, 쌍방이 대동통역인을 활용하는 데에 이의가 없고 통역인의 중립성과 통역 능력 등에 문제가 없는 때에는 대동통역인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 또는 지인이나 자원봉사자 등 장애인관련자가 대동통역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심리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동석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통역인으로 지정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장애인관련자는 장애인인 피고인과 동석하여 지정통역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보조할 인력이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37조)을 두고 있으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에 관한 규정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진술조력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9쪽 이하 참고). 장애인인 피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한 장애인관련자가 있다면 피고인과 동석을 허용하여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판기일의 심리

1)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4조).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항).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진술거부권이나 주소변동사실 보고의무 등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예시 : “피고인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주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바뀐 주소를 신고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게 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알려준 후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취지에 비추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음이 의심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살핀 바

와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 유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장애를 뜻한다. 재판장은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수치심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장애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한 곳이 있나요?” 등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인이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이전 또는 제1회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판장은 우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기재하게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할 경우 가능한 것은 즉시 제공하고, 만일 요구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요구사항 및 제공되지 못한 이유를 조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청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가능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거나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한다(형사소송법 제285조).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 제1항).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 공소장부분을 공판기일 전에 미리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거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로 하여금 기소요지만을 진술하게 하기보다는 공소사실 전체를 낭독하게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인에게 수화통역이 필요한 경우 기소 요지 진술 전부를 통역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에 관하여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진술한 의견이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보충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9조는 피고인에 대한 보조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정신적 장애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렵고, 질문자의 질문의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며,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도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진술하느냐,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진술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신적 장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울 때도 있으므로 재판장은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기 전 피고인의 의사를 반복하여 세심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통역

가) 통역의 범위

수화통역인은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 재판 과정 전부를, 증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의 재판 과정을 통역한다. 재판장은 수화통역인에게 통역을 명하고 선서하도록 한 다음, 수화통역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인 피고인 또는 증인에게 통역인이 법정에서 통역하게 되었고 성실하게 통역한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였다든 사실을 수화로 설명하도록 한다.

재판장은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통역인의 일정을 확인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통역인이 계속 통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수화통역인의 법정 위치

수화통역인의 위치는 청각장애인과 통역인에게 적절한 위치를 물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청각장애인은 발화자의 입 모양을 보고 의미를 해독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각장애인이 재판장과 통역인을 다 바라볼 수 있고, 재판장 역시 통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 즉, 참여사무관과 증인석 사이에 통역인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과 재판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그림 3). 통역인의 자리는 보조의자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림 3】



다만, 청각장애인이인 방청객이 재판 내용에 관한 수화통역을 요청하는 경우 방청객을 위한 수화통역인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때에는 수화통역인이 법대 앞쪽으로 와서 피고인석을 바라보되 방청객을 향하여 조금 몸을 돌려서 통역을 하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역인의 위치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이고 증인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통역인을 증인 옆에 자리하도록 하여 피

고인이 증인과 통역인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피고인과 증인이 모두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피고인과 증인이 모두 발화자와 통역자를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통역자를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문자통역

수화통역이나 보청기가 지원된 경우라도 청각장애인에게 문자를 해독할 능력이 있다면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문자통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인을 선정·관리하는 별도의 규칙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판장은 속기사를 참여하게 하여 법정에서 비치된 스크린을 통해 공판 진행 전체 내용 또는 필요한 부분을 속기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자통역을 할 수 있다(문자통역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69쪽 참조).

라) 통역인에 대한 기피 및 통역에 대한 이의

수화통역인의 통역으로 인해 불공평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은 통역인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8조, 제23조).

외국인 피고인이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통역예규 제14조는 피신문자가 법정에서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과 통역을 다시 한번 시행하게 하고, 피신문자가 재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역인에게 녹음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도의 통역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화통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위 예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처리할 수 있고,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화통역이 이루어지는 공판절차의 심리에 관하여는 녹음보다 영상녹화가 더 유용하므로 심리과정을 녹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공판조서의 낭독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시각장애자인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에 응하여야 함을 유의한다.

다. 증거보전절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은 검사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하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인을 신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은 피해자의 변호사는 증거보전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 이외 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

보전절차를 활용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증거조사절차

1)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를 유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 증거서류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피의자에게 위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임에도 수사기관이 장애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조서를 읽어주지 않은 채 조서를 열람시킨 다음 피의자의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자필기재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게 피의자신문 당시 조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다면 낭독을 요구하였고, 낭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재판장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영상 녹화된 내용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화면에 나타난 영상녹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단순히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형사소송법 제292조 제3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기보다는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원칙에 따라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낭독해야 할 서류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사본을 피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

환하여 제공하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내용을 살펴볼 기회를 주고 다음 기일에 증거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증거물

증거물이 제시된 경우에는 단순히 법정에서 제시하게 하는 것(형사소송법 제 292조의2)에서 나아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증거물의 형상을 설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인의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법정에서 갖추어져 있는 실물화상기의 확대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그 압수·수색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영장실질심사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영장 제시가 어떠한 방식(영장의 내용을 읽어주는 방식 등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118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피의자가 영장을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시각장애인이라면 형식적인 영장의 제시만으로는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증거의 열람·등사 등

검사가 증거를 제출한 이후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하여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어느 기관이 주체가 되어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제공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증거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증거의 보관 주체는 법원인 점, 열람·등사 청구의 상대방도 법원인 점을 고려하면 증거를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등사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문서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해 달라고 청구할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생성한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전자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상 전자파일 자체를 증거로 볼

수도 없다) 위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재판장은 검사의 협조를 얻어 수정할 수 없는 읽기 전용 파일의 형태로 전자파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특수성 및 형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제4항을 근거로 재판장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증거의 전자파일 등을 직접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검사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의 전자파일을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전자파일 이외에 법원에서 제공 가능한 다른 형태로의 변환을 구하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낭독하는 방법에 의하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문자를 해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통해 내용의 요지를 고지하고 증거서류 제시를 통한 열람의 방법(형사소송법 제292조)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3)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당연히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는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피고인신문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또는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나아가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기는 하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등에 비추어 장애인인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의 적극적인 소송 개입은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통해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장은 각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을 위한 신체적·심리적 고려사항(72쪽 참조)에 유의하여 피고인신문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에 대한 증인신문

1) 증인지원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는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증인지원관)³⁰⁾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10에서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증인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피해자인 증인 및 피해자 아닌 증인에 관하여서도 증인지원관을 둘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증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특히 요구된다고 보이므로, 각 법원의 사정에 비추어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증인 지원을 위한 직원 지정이 가능한 경우 재판장은 장애인인 증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또한,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

30)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증인지원 담당 법원 직원의 업무)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법원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인의 방법 및 절차,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
2.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예, 증인의 안전을 위한 법원 구내에서의 동행, 각 법원별로 마련된 증인의 신변보호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4. 증인지원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따라서 장애가 있기는 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함이 바람직하다. 이때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인 증인에 국한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아닌 증인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하여 증언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장애인인 증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의사소통을 도와줄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장은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인 증인 소환 시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증인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설명하게 하여 증인신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증인 선서 및 서명·날인

장애로 인하여 선서서를 읽거나 서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7조 제3항 단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은 증인선서서를 보고 수화로 선서하고 이를 수화통역인이 통역하는 방법으로 선서를 할 수 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 대하여는 수화통역인이 증인선서서의 내용을 수화로 하면 청각장애인이 이를 따라 수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청각장애인에게 미리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다만 증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159조), 특히 정신적 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의하면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장애인인 증인의 심신의 상태 등을 살펴 위 법 제165조의2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문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장애 유형별 유의사항

가) 증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증인이 시각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 재판장은 참여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증인 소환장 송달과 함께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소환하게 하여 증인 출석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이 있을 경우 이를 증인에게 제시하는 데에서 나아가 신문의 주체로 하여금 증인에게 서류나 물건을 설명하게 하되, 재판장은 그 설명에 왜곡이 있을 경우 적절히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각장애인인 증인이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증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되 일반적인 등본도 함께 제공하여 원본과 변환된 서류가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한다. 증인신문조서는 법원이 전자적으로 생성·보관하는 문서이므로 필요한 경우 수정이 불가능한 읽기 전용 한글 파일 등 적절한 형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증인이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

(1) 시간적 배려

정신적 장애인이 증인신문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참작하여 증인신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정신적 장애인은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므로 휴식을 자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빨리 말하기가 어려우므로 대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까지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분보충, 투약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2) 증인신문요령

신문할 때에는 추상적인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말하거나 빨리 말하도록 다그쳐서도 안 된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질문을 하게 되면 당황하여 무조건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등 부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질문 요령

질문 원칙

- ①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말하며 가능한 한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 ② 신문할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 시간, 계절, 인과관계 및 시간적 선후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지적 발달상태가 어느정도인지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분부분 나누어 의미를 전달한다.
- ④ 가능한 경우 그림이나 동작 등을 사용하여 쉽게 의미를 전달한다.
- ⑤ 가능한 한 인칭대명사나 법정에서 사용하는 명칭 대신 고유명사를 그대로 사용

하도록 한다(가령, 피고인, 증인이라고 하기보다 이름을 사용하도록 함).

- ⑥ 먼저 비유도적인 개방형 질문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진술에서 나온 내용을 기초로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 내도록 하며, “예/아니오”식의 단답형 질문과 유도신문은 피한다.
- ⑦ 선택형 질문은 될 수 있으면 피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하다면 개방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을 함께 사용한다(가령, “사건을 목격한 때가 아침인지, 저녁인지, 아니면 다른 어느 때인지”와 같은 질문 형식).
- ⑧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단어나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반복해서 전달하되, 장애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꾸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람직한 진술권유³¹⁾

- ① 일반적인 진술권유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전부 말해줄 수 있나요?
 - (사건이 한 번 이상 발생했다고 진술했을 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해주겠어요?
- ② 후속적인 진술권유
 -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 아까 ...라고 말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 ③ 재초점 진술권유
 - (피해자의 나이나 계절 등 해당 시점을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간단히 제시한 다음) 그때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전부 말해주겠어요?
- ④ 단서 제시 진술권유
 - (피해자가 ‘○가 나를 만졌어요’라고 진술했을 때) ○가 △를 만졌다고 했지요?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피해자가 ‘무서운 말’이라고 언급했을 때) ○가 무서운 말을 했다고 했지요? 그 말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진술권유

- ① 진술되지 않은 내용을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진술보다 앞서 제시하는 질문 또는

31) 아래 내용은 아동에 대한 질문 요령에 관한 내용을 정신적 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변형한 것이다.

예상하는 응답을 내포한 질문

- ○가 △를 만졌을 때 어머니가 거기 있었습니까?

(피해자가 '키스했다'는 진술만 했을 뿐인데 그 전에 '만졌을 것'이라 추정하거나, 피해자는 만난 단계까지만 진술했는데 그다음에 일어날 일로 '만졌다'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② 불완전한 선택항을 제시하는 질문

- 피해자: 우리는 소파에 누웠어요.

- 질문자: ○가 △의 위에 누웠습니까, 아니면 △가 ○의 위에 누웠습니까?

③ 대립적인 발언을 하거나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말

-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맞습니까?

- 방금 ○가 △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말했는데, △는 그와 달리 ...라고 말했습니다.

④ 기억에 혼란을 주는 말

- 그 사람이 '집 앞 슈퍼마켓'에서부터 따라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집 앞 마트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먹을 것을 사 줄 테니 함께 가고 했어요'라고 진술했을 때, '마트'를 정식 상호에 따라 ○○슈퍼마켓 등으로 정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억에 혼란을 주게 되어, '예/아니오'의 대답을 바꾸어 버릴 수 있음)

질문유형의 비교

- ① - △가 ○의 침대 위에 있었습니까? : 암시형 질문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가 ○의 침실에 있었다고 했는데, 침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더 말해 주시겠습니까? : 바람직함
- ② - ○이 △에게 키스했다고 했는데, 입술에 키스했습니까? : 불완전한 선택 형 질문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이 △에게 키스했다고 했는데, 그 키스에 대해 더 말해주시겠습니까? : 바람직함

(3) 보조도구의 활용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림카드, 인형 등 보조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소한 그림카드를 접할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사가 왜곡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에 발달장애인이 사용하여 오던 익숙한 그림카드, 인형 등을 사용하여 진술하는 것을 허락할 필요가 있다³²⁾.

(4) 전문가 의견 조회

성폭력사건의 경우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4항 단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장애로 인한 진술 특성에 따른 진술 내용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 조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사.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의하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판장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그림카드 사용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① 그림카드는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표정카드나 장애인에게 익숙한 것이 좋다.
- ② 의사소통의 보조를 위해서는 최소한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그림카드가 있어야 한다.
- ③ 그림카드라고 하여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술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림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④ 그림카드는 보조도구에 불과하므로 결국은 의사소통 보조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 국민참여재판

가.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부분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변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만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 유형 및 그 정도에 따라서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또는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및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안내 사실 및 피고인의 답변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국민참여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지원하거나 주의할 사항은 일반 공판절차에서와 같다.

나. 배심원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

1)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 단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에게 공판기일통지서와 함께 질문표를 발송하고, 배심원후보자들로부터 작성된 질문표를 받는다. 재판장은 배심원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질문표를 검토하여 배심원후보자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배심원후보자에게 연락하게 하여 배심원 선정기일에서 필요한 지원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을 통하여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 중 장애인이 있음을 알려주어 검사나 변호인이 공판 과정에서 사용할 자료를 미리 장애인인 배심원후보자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배심원 선정기일

배심원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중 장애인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재판장은 배심원 선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장애인인 배심원후보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배심원후보자 중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배심원 선정기일에서부터 수화통역인 또는 문자통역인이 필요하다.

배심원 선정기일을 진행함에 있어 배심원후보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인 배심원후보자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여서는 곤란하다. 단지 장애만을 이유로 형사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인 배심원후보자가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나아가 검사나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이유부기피가 단지 장애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재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할 것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공판기일

가) 사법지원의 필요성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므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배심원에게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심원의 형사재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앞서 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 피고인과 동일한 정도의 사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재판장은 배심원에 대한 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진행에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판기일에서 사용할 자료를 시각장애인인 배심원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변환하게 하여야 하고, 이때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변환에 걸리는 시간을 부여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 보유 시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장애인관련자 및 보조인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수화통역, 점역,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장애인관련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장애인관련자를 대동하지 않은 배심원에 대하여는 법원 직원을 의사소통보조인으로 지정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각장애인이 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 공판기일에서 사용되는 자료에 관하여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장애인관련자 또는 보조인으로 지정된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공판에서 제시되는 시각적 자료를 시각장애인에게 말로 읽거나 묘사·설명하여 주도록 하고, 특히 중요한 시각적 자료(주요 증거물인 서류나 영상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관련자나 보조인이 시각장애인에게 묘사·설명하는 내용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을 피고인, 변호인 및 검사 등 소송관계인이 확인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장애인관련자나 보조인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하므로 이들이 장애인의 배심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검사가 장애인관련자의 공정성·객관성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판장은 그 장애인관련자의 관여를 제지하고 대신 장애인 배심원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원 직원을 보조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평의

평의 및 평결절차에서는 공판절차와 달리 법관이나 소송관계인이 장애인관련자의 역할 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이 대동한 장애인관련자의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인 배심원의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자보다는 법원 직원을 의사소통보조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수화통역인으로 하여금 평의 등 절차에서 장애인을 보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판장은 보조인이나 수화통역인 등에게 배심원의 평의에 개입할 수 없고, 단지 장애인인 배심원의 활동을 보조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배심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평의를 진행하는 도중 필요한 경우 배심원 대표를 통하여 재판장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각 서류 사본 및 증거물을 제공할 수 있다. 참여재판이 대부분 1회 기일로 종결되어 바로 평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증거서류 등을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법원 직원인 의사소통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평의에서 장애인 배심원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판결의 선고

재판장은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재정 중인 통역인에게 판결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통역을 준비하게 할 수 있고, 판결 내용 특히 주문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통역 예규 제15조). 특히 판결의 주문과 불복 방법에 관하여는 장애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건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할 때에는 판결 이유의 설명과 수화 통역 과정 때문에 진행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간을 지정한다.

안내문 및 신청서

1.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
2.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3.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4. 통역인 안내문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안내문
6.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7. 통역이 필요한 사건의 변호에 관한 안내문



재판사무시스템의 「장애인 사법지원」 메뉴에서
각종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1]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

이 안내문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누가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소송절차에 참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이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소송절차에 원고, 피고와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외에 증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어떠한 사법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가?

신청인은 소송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법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화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의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신청인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재판부에게 사법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은 장애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신청인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에 대한 사법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이 허가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소재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담당 직원	〇〇	전화 번호	〇〇〇-〇〇〇〇	FAX	〇〇〇-〇〇〇〇
	〇-〇 (우) 〇〇〇-〇〇〇						



※ 본인의 장애 상태를 법원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앞면의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중 본인의 장애 유형과 관계있는 질문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시각장애 관련]

가. 시력이 떨어져 글자를 읽거나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글자를 읽기 어렵지만, 가까이서 보거나 돋보기를 이용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는 글자의 크기는 ()이다.

① 법원(10p) ② 법원(20p)

③ 법원(30p) ④ 법원(40p)

2) 돋보기와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해도 일반적으로 글자를 읽기 어렵지만, 확대인쇄물은 읽을 수 있다.()

3) 점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전자파일을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까운 곳에서 그러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5) 시력이 떨어져 법원 청사 안팎을 다닐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6) 기타(그 밖에 법원에 알리고 싶은 장애 관련 사정을 아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관련]

나. 청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상대화가 잘 들리지 않지만, 가까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2) 일상적인 말을 직접 듣기는 어렵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 3) 소리를 듣기는 어렵지만, 수화를 이해할 수 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다(). 구화를 배워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4)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수화를 구사할 수 있다(). 글자를 써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컴퓨터 자판을 쉽게 다룰 수 있다().
- 5) 기타(그 밖에 법원에 알리고 싶은 장애 관련 사정을 아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 관련]

다. 몸이 불편하여 재판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휠체어나 목발과 같은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동에 큰 불편은 없다.()
- 2)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적절한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보조기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 3) 몸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도와줄 보조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도움의 내용을 쓰세요. 예를 들어, 휠체어는 있지만 굴릴 힘이 없어 누군가가 계속 뒤에서 밀어주어야 한다는 등)
- 4) 몸이 불편해 오랜 시간 재판받기가 어려우므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몸 상태를 써 주세요).
- 5) 몸이 불편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내 의사를 잘 전달해 줄 보조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면 보조인을 함께 데려올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보조인은 누구인지를 써 주세요).

[기타]

라. 위에 표시된 내용 외에 재판을 받는 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기재하고, 그에 관하여 법원에 인적·물적으로 바라는 조치가 있다면 아래에 쓰시기 바랍니다.



[별지 4]

통역인 안내문

통역 업무를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정에서의 통역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주의사항

가.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통역을 하여야 합니다.

통역인은 통역하기에 앞서 먼저 위와 같은 취지의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것으로서, 고의로 거짓 통역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정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통역인도 공정함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장애인인 당사자 측이 재판절차 이외에서 통역인에게 법률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통역인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승패 가능성이나 향후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면 이것에 의하여 당사자가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역 이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통역인은 사전에 재판 관계 서류 등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리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통역인은 이처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됩니다.

2. 재판기일 전 준비

가. 정확한 통역과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장 사본, 신문사항 등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증인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법정에서의 통역 경험, 특히 민사사건에서의 통역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사전에 다른 사건의 법정 통역 과정을 방청하거나 대법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법률전문용어를 익혀두면 도움이 됩니다.

3. 재판기일에서의 통역

가. 원진술자(장애인인 당사자나 증인)가 말한 그대로 충실하게 통역하여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몇 번이고 질문이나 답변이 반복되는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각 질문의 뉘앙스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답변자의 말을 충실하게 통역하여야 합니다. 일부를 생략하거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 취지만을 통역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통역을 위하여 메모지를 준비하였다가 진술 내용을 메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직접화법으로 통역하여야 하고, “이러이러하다고 답변합니다.”라는 간접화법으로 통역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질문이나 답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의 대처 방법

통역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나 당사자, 변호인은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하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복잡한 질문이나 여러 개의 질문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통역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신문 도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나 증인의 목소리가 작거나 말이 빨라 이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이를 알려 통역인 스스로 질문이나 답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다시 한 번 발언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장애인인 당사자나 증인이 통역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

장애인인 당사자나 증인이 통역인의 통역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는 경우 통역인이 임의로 원래 질문의 취지에 맞도록 변경하여 통역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통역인은 당사자나 증인이 말한 그대로를 통역한 후 당사자나 증인이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질문을 쉽게 정리하기도 하고, 질문자에게 쉽게 바꾸어 질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측과 답변하는 측이 서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공정한 재판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라.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도 통역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나 증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 신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재판장이나 쌍방 소송 대리인의 발언 등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을 충실하게 통역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별지 5]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관한 안내문

1. 구속 전 피의자신문의 의미

- 수사기관이 귀하를 구속하고자 할 때 귀하는 판사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라고 합니다.
- 귀하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판사를 만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의 조치

- 귀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다시 법원에서 구속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심사받을 수 있고(이를 '구속적부심'이라 합니다), 이때 법원이 귀하의 석방을 명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
-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의자 본인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의 유의사항

-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이 됩니다.
- 다만 이것으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석방이 되더라도 모든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귀하가 사는 곳이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곧바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귀하와 연락이 안 되어 귀하가 지정된 날짜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별지 6]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1. 공소장과 국선변호신청서

- 귀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봉한 서류는 공소장의 부분입니다.
- 귀하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경우 국선변호신청서(법원에 비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고, 만약 귀하가 구속되어 있다면 교도소·구치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재판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

- 재판장은 귀하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이어서 귀하나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 후, 증거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 변호인이 귀하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 귀하에 대한 질문이 끝난 후, 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귀하의 의견을 들은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첫날 끝나기도 하고, 따로 기일을 잡아서 수일에 걸쳐 행하여지기도 합니다.

3. 보석을 청구할 권리

-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귀하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청구라고 합니다.
- 보석 허가 여부는 범행의 동기와 성질, 피해자와 합의 여부,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되며, 보석 허가 시에는 일정 금액 또는 담보의 제공, 서약서 제출 등 출석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석으로 석방되더라도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공판에서 피고인의 증거신청권 등

-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귀하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룰 수 있는 권리

- 귀하가 재판을 받은 후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해달라고 상소할 수 있습니다.
- 상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거나 교도소·구치소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별지 기]

통역이 필요한 사건의 변호에 관한 안내문

1. 피고인의 접견과 통역인의 동행에 관하여

- 가. 변호인은 청각장애인인 피고인과 접견하기 위하여 스스로 통역인에게 의뢰하여 접견하는 외에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을 동행하여 접견할 수 있습니다.
- 나. 변호인이 구치소 등의 장소에서 수화통역인을 대동하여 피고인을 접견할 경우 구치소장 등이 통역인의 증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수화통역인인 경우에는 통역인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니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에게 동행을 의뢰할 때에는 지정통역인에게 직접 연락하시고, 피고인 등의 소송관계인이 지정통역인에게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통역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2. 국선변호인의 사전 준비와 그 비용청구에 관하여

- 가. 국선변호인이 지정통역인에게 접견 동행 등을 의뢰한 경우 국선변호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 법원이 직접 그 통역인에게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에 필요한 비용인지 의문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국선변호인이 스스로 의뢰한 통역인을 접견에 동행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통역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향후 국선변호인의 일당과 보수를 지급할 때 국선변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통역료를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통역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통역료 등의 문제가 있으니 법원에 사전에 연락하시고, 일당·보수에 관한 통역료 영수증 등도 보관하였다가 향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증거조사와 변론에 관하여

정확한 통역 및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시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간결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론할 내용에 관하여는 통역인에게 교부할 요지서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 법원(지원)의 형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 쇄 : 2013년 7월

발 행 : 2013년 7월

발행처 : 법원행정처

디자인 : (주)홍디자인 (464-5167)

非賣品
